

# 소득세제의 소득재분배 효과 분석 및 시사점

| 설 윤 · 황상현 |



연구

13-04

## 소득세제의 소득재분배 효과 분석 및 시사점

설 윤·황상현

## 소득세제의 소득재분배 효과 분석 및 시사점

1판1쇄 인쇄/ 2013년 12월 16일

1판1쇄 발행/ 2013년 12월 18일

발행처/ 한국경제연구원

발행인/ 최병일

편집인/ 최병일

등록번호/ 제318-1982-000003호

(150-88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FK1타워 45층

전화 3771-0001(대표), 3771-0048(직통) / 팩스 785-0270

<http://www.keri.org>

© 한국경제연구원, 2013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 3771-0048

ISBN 978-89-8031-664-9  
CIP제어번호 2013027406

8,000원

\* 제작대행 : (주)FKI미디어

현행 우리나라 소득세제는 지나친 비과세·감면으로 인해 면세점이 매우 높고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에 집중되어 있어 소득세제의 누진도가 상당히 높다. 일반적으로 소득세제의 누진도와 소득재분배 효과 간에는 역U자형 관계가 존재한다고 알려진다. 따라서 현행 우리나라 소득세제는 누진도가 상당히 높지만 소득재분배 효과에 있어서는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 소득세제의 누진도와 소득재분배 효과, 그리고 이 둘 간의 상관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이로부터 올해 새롭게 출범한 박근혜 정부의 소득세제 개편 방향에 대해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실증분석의 주요 결과로서 우리나라 소득세제의 누진도와 소득재분배 효과 간 상관관계가 역U자의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고 한다. 또한 소득세제의 누진도 변화율과 소득재분배 효과 변화율로 살펴본 상관관계는 음(-)의 관계를 보여 이러한 역U자 형태의 결과를 지지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소득세제의 누진도가 증가할수록 소득재분배 효과는 증가하다가 소득재분배 효과가 최고치에 달하는 시점, 즉 한계 소득재분배 효과가 영(0)이 되는 시점 이후 누진도가 증가할수록 오히려 소득재분배 효과는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소득세제의 누진도가 한 단위 증가할 때 ‘한계 소득재분배 효과 체감의 법칙’이

작용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2012년 현재 Kakwani 지수가 0.3146, 소득재분배 효과가 -1.3247로 소득세제의 누진도와 소득재분배 효과는 이 둘 간의 역U자형 상관관계 그래프에서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어 현행 소득세제는 누진도가 이미 상당히 높아 소득재분배 효과는 오히려 낮아지고 있는 상태에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복지재원 마련과 형평과세 실현을 위한 명분에서 현 정부가 추진 중인 고소득층 증세정책 등은 소득세제의 누진도를 현재보다 더욱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그 실효성 없이 기대치 않은 다른 부정적인 경제적 효과만을 초래할 수도 있다. 즉, 현행 소득세제는 소득재분배 효과가 미약한 것이 문제이긴 하나 그 원인이 고소득층의 낮은 세부담이 아니라 전 소득계층에 걸친 과도한 비과세·감면으로 인해 소득세제가 세수를 확보하는 세제로서 기능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향후 소득세의 세입기반 확충과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서 현 정부의 바람직한 소득세제 개편 방향은 고소득층에 대한 세부담 증대가 우선될 것이 아니라, 자영업자에 대한 과표양성화를 전제로 국민개세주의 원칙에서 모든 소득계층을 포함하는 비과세·감면 축소 및 합리화에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본 연구를 수행한 경북대학교 경영학부의 설운 교수와 본원의 황상현 연구위원은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값진 조언으로 도움을 준 충북대학교 경제학과의 임병인 교수, 한국지방세연구원의 김필현 연구위원, 본원의 조경엽 선임연구위원, 그리고 익명의 검토자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있다. 또한 연구를

위한 자료의 수집 및 정리로 도움을 준 이선영 연구원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있다. 끝으로 본 보고서에 담긴 내용은 저자들의 개인적 견해에 한하며 본원의 공식 견해가 아니라는 것을 밝혀 두는 바이다.

2013년 12월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최병일

## 목 차

요 약	9
제Ⅰ장 서 론	15
제Ⅱ장 우리나라 소득세제의 변천과 논의	23
2.1. 우리나라 소득세제의 변천	25
2.2. 소득세제의 누진도 변화와 논의	40
2.3. 현 정부의 소득세제 개편 방향	47
제Ⅲ장 분석방법 및 입력데이터	53
3.1. 분석방법	55
3.2. 입력데이터	62
제Ⅳ장 실증분석	67
4.1. 전체 및 분위별 평균 소득 변화추이	70
4.2. 소득재분배 추이	82
4.3. 누진도와 소득재분배 효과 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	94
제Ⅴ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97
5.1. 소득세제의 누진도와 소득재분배 효과 간 역U자형 상관관계	99
5.2. 정책적 시사점	100
5.3. 연구의 한계	104
부 록	107
참고문헌	124
영문초록	127

표 목차

〈표 1〉 기본세율 .....31

〈표 2〉 근로소득공제 .....33

〈표 3〉 근로소득세액공제 .....39

〈표 4〉 근로 및 종합소득세 부담 분포(2009년 귀속) .....46

〈표 5〉 총·대선 후 2012년 세법개정안의 주요 내용 .....47

〈표 6〉 2013년 세법개정안 중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관련  
내용 .....49

〈표 7〉 2013년 세법개정안 수정 내용 .....52

〈표 8〉 소득 구성항목 - 가계동향조사 .....64

〈표 9〉 기초통계량 - 전체가구 .....65

〈표 10〉 기초통계량 - 근로자가구 vs. 자영업자가구 .....66

〈표 11〉 소득분위별 경상소득 변화추이 - 전 가구 .....71

〈표 12〉 소득분위별 소득세액 변화추이 - 전 가구 .....72

〈표 13〉 소득분위별 세후소득 변화추이 - 전 가구 .....73

〈표 14〉 소득분위별 경상소득 변화추이 - 근로자가구 .....75

〈표 15〉 소득분위별 소득세액 변화추이 - 근로자가구 .....76

〈표 16〉 소득분위별 세후소득 변화추이 - 근로자가구 .....77

〈표 17〉 소득분위별 경상소득 변화추이 - 자영업자가구 .....79

〈표 18〉 소득분위별 소득세액 변화추이 - 자영업자가구 .....80

〈표 19〉 소득분위별 세후소득 변화추이 - 자영업자가구 .....81

〈표 20〉 세부담 누진도 변화와 소득재분배효과 - 전 가구 .....85

〈표 21〉 세부담 누진도 변화와 소득재분배효과 - 근로자가구 .....90

〈표 22〉 세부담 누진도 변화와 소득재분배효과 - 자영업자가구  
.....93

〈부표 1〉 소득공제: 인적공제 .....109

〈부표 2〉 소득공제: 특별공제 .....111

〈부표 3〉 국세수입 및 감면 .....122

〈부표 4〉 소득재분배 시계열 추이 .....123

## 그림 목차

<그림 1> 세부담의 누진도와 소득재분배 효과의 상관관계	·18
<그림 2> 소득세제의 소득구분과 과세체계	·27
<그림 3> 종합소득 과세체계	·28
<그림 4> 소득세제의 누진도 변화추이	·40
<그림 5> 국세수입 및 감면의 규모와 비중	·42
<그림 6> 소득세 부담률 국제비교(2009년도)	·44
<그림 7> 로렌츠 곡선과 지니계수	·59
<그림 8> 소득재분배 시계열 추이	·83
<그림 9> 소득재분배 시계열 추이 근로자, 자영업자 비교	·83
<그림 10> 소득세제의 누진도와 소득재분배 효과 변화추이 - 전 가구	·85
<그림 11> 세부담 누진도와 소득재분배효과와의 관계 - 전 가구	·88
<그림 12> 세부담누진도의 변화율과 소득재분배 효과변화율과의 관계 - 전 가구	·88
<그림 13> 세부담의 누진도와 소득재분배 변화추이 - 근로자 vs. 자영업자	·89
<그림 14> 세부담 누진도와 소득재분배효과와의 관계 - 근로자가구	·91
<그림 15> 누진도 변화율과 재분배효과 변화율과의 관계 - 근로자가구	·92
<그림 16> 세부담 누진도와 소득재분배효과와의 관계 자영업자가구	·94
<그림 17> 누진도 변화율과 재분배효과 변화율과의 관계 - 자영업자가구	·94
<그림 18> 세부담 누진도와 소득재분배효과와의 관계 - 두 그룹 비교	·95
<그림 19> 누진도 변화율과 재분배효과 변화율과의 관계 - 두 그룹 비교	·96

## □ 연구의 배경

지난 2008~2012년 이명박 정부는 저소득계층부터 고소득계층까지 전소득계층에 걸쳐 감세정책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것을 계획했으나,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글로벌 재정위기를 거치는 동안에 소득세의 세율과 비과세·감면 등에서 중산·서민층에 대해 감세를 계속 진행해 왔던 반면,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오히려 증세하였다. 2009년 귀속소득 기준으로 근로소득세의 경우 상위소득자 11.95%가 전체 근로소득세의 84.73%, 종합소득세의 경우 상위소득자 7.18%가 전체 종합소득세의 85.50%를 부담하고 있다. 또한 면세자 비율은 근로소득세의 경우 40.25%, 종합소득세의 경우 28.16%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현행 우리나라 소득세제는 저소득계층보다 고소득계층에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많이 집중되어 있어 누진도가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소득세제는 누진도가 상당히 높지만 소득재분배 효과에 있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소득세제의 누진도와 소득재분배 효과 간에는 역U자형 관계가 존재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역U자형 상관관계 그래프에서 오른쪽에 위치하여 소득세제의 누진도가 이미 상당히 높아 소득재분배 효과는 오히려 낮아지고 있는 상태에 있을 것이라고 추정되고 있다. 만약 현행 우리나라 소득세제가 지난 정부의 조세정책 변화에 따라 높은 누진도에 낮은 소득재분배 효과를 가

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향후 복지재원 마련과 형평과세 실현을 위한 명분에서 새 정부가 추진 중인 고소득층 증세정책 등은 그 실효성 없이 기대치 않은 다른 부정적인 경제적 효과만을 초래할 수도 있다.

## □ 연구의 목적 및 방법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 소득세제의 누진도와 소득재분배 효과, 그리고 이 둘 간의 상관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이로부터 올해 새롭게 출범한 박근혜 정부의 소득세제 개편 방향에 대해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미시자료(micro-data)로서 1990~2012년 가계동향조사의 장기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여 소득세제의 누진도를 Kakwani 지수로, 소득재분배 효과를 세전과 세후 지니계수를 활용하여 계산한 후, 우리나라 소득세제의 누진도와 소득재분배 효과 간에 역U자형 상관관계를 규명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최근 우리나라 소득세제의 누진도와 소득재분배 효과의 정도를 파악하여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득세제 개편 방향에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 □ 분석결과

본 연구는 전 가구 대상, 나아가 전 가구를 근로자 vs. 자영업자 가구로 분할하여 소득세제의 누진도와 소득재분배 효과에 대해 분석하였다. 전 가구 대상 분석에서는 소득세제의 누진도와 소득재분배 효과 간 상관관계가 역U자의 형태를 나타내고 있으며, 또한 근로자 및 자영업자 가구 대상 분석에서도 이와 유사한 패턴으로 역U자 형태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전 가구 대상 소득세제의 누진도 변화율과 소득재분배 효과 변화율로 살펴본 상관관계는 음(-)의 관계를 보여 역U자 형태의 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또한 근로자 가구만을 대상으로 한 분석의 결과는 여전히 음(-)의 상관관계를 도출하고 있으며 자영업자 가구만을 대상으로 한 분석의 결과에서도 여전히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이는 전 가구 및 두 그룹으로 분할한 근로자 가구와 자영업자 가구 대상 분석에서 소득세제의 누진도가 증가할수록 소득재분배 효과는 증가하다가 소득재분배 효과가 최고치에 달하는 시점, 즉 한계 소득재분배 효과가 영(0)이 되는 시점 이후 누진도가 증가할수록 오히려 소득재분배 효과는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자면 소득세제의 누진도가 한 단위 증가할 때 '한계 소득재분배 효과 체감의 법칙'이 작용한다는 것이다.

## □ 정책적 시사점

현행 우리나라 소득세제는 지하경제의 큰 규모와 비과세·감면의 급속한 증가로 인해 세입기반이 좁고 약한 것이 문제이다.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고용구조에서 자영업자 비중이 상당히 높아 세무행정상 과표양성화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하경제 규모가 상당히 크다. 또한 세수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대형세 중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감면에 비해 소득세 감면은 국세감면의 증가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국세감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상당히 크다. 이런 이유는 근로자와 자영업자 간 형평과세를 실현한다는 목적으로 자영업자에 비해 근로자에게는 근로소득공제, 교육비·의료비 등의 특별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등 더 많은 공제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이 현행 소득세제의 지나친 비과세·감면으로 인해 면세점이 매우 높고 세부담이 고소득층에 집중되어 있어 세부담의 누진도가 이미 상당히 높은 상황에서 현 정부의 소득세제 개편 방향인 고소득층에 대한 세부담 증대는 오히려 세부담의 누진도를 더욱 높여 소득재분배 효과를 더욱 약화시킬 수 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로서 우리나라 소득세제의 누진도와 소득재분배 효과 간 상관관계는 역U자형으로 나타났다. 2012년 현재 Kakwani 지수가 0.3146, 소득재분배 효과가 -1.3247로 소득세제의 누진도와 소득재분배 효과는 이 둘 간의 역U자형 상관관계 그래프에서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어 현행 소득세제는 세부담의 누진도가 이미 상당히 높아 소득재분배 효과는 오히려 낮아지고 있는 상태에 있다. 따라서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중인 소득공제의 세

액공제 전환,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및 7,000만 원 이하 구간에 대한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상향조정 등 소득세제 개편은 고소득층에 소득세 부담을 더욱 집중시켜 현재보다 세부담의 누진도를 더욱 높이고 이에 따라 소득재분배 효과를 더욱 약화시킬 수 있다. 즉, 현행 소득세제는 소득재분배 효과가 미약한 것이 문제이긴 하나 그 원인이 고소득층의 낮은 세부담이 아니라 전 소득계층에 걸친 과도한 비과세·감면으로 인해 소득세제가 세수를 확보하는 세제로서 기능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향후 소득세의 세입기반 확충과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서 현 정부의 바람직한 소득세제 개편 방향은 고소득층에 대한 세부담 증대가 우선될 것이 아니라, 자영업자에 대한 과표양성화를 전제로 국민개세주의 원칙에서 모든 소득계층을 포함하는 비과세·감면 축소 및 합리화에 있다. 자영업자의 소득세 탈세는 부가가치세 탈세에 기인하므로 자영업자의 과표양성화를 위해 부가가치세의 간이과세 폐지와 근거과세 확립 등이 필요하다. 자영업자의 과표양성화에 따라 소득세의 비과세·감면 축소 및 합리화로 근로자와 자영업자 간 공제상 차별을 해소하고 면세점을 인하해 나가며 소득세의 세수확보 기능을 회복하는 소득세 정상화가 시급하다.

## □ 연구의 한계

본 연구에서는 소득세제의 누진도와 소득재분배 효과 간 상관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가계동향조사의 장기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가구 소득에 대한 시계열 자료는 가계동향조사로부터 충분히 얻을 수 있지만, 가구가 부담하는 세액 관련 시계열 자료는 가계동향조사가 제공하는 정보의 한계로 인해 1990~2012년 기간으로 제한되어 사용되었다. 이러한 점은 본 연구의 분석에서 다음과 같은 한계로 남는다.

소득세액에 대한 시계열 자료는 가계동향조사가 제공하는 세액 자료들을 기초로 계산하였는데 이러한 세액 자료들은 조사과정에서 가구로부터 과소 보고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제한할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의 분석은 연도별 소득세제의 누진도 및 소득분배 지수 등에 대한 상대적인 위치에 기초하여 소득세제의 누진도와 소득재분배 효과 간 상관관계를 도출하고 있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의 신뢰성 있는 세액 자료가 아니더라도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결과는 항상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1990~2012년 기간이라는 비교적 긴 시계열 세액 자료는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대해 어느 정도 신뢰성을 확보한다고 여겨진다. 그리고 본 연구에 있어 주요 결과인 소득세제의 누진도와 소득재분배 효과 간의 역 U자형 관계를 도출함에 있어서 상관관계 분석에 그친 점이 있다. 이는 가계동향조사가 제공하는 시계열 세액 자료의 수가 23개로 제한되어 보다 신뢰성을 갖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계량 모형 분석이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본 연구의 분석은 소득세제의 누진도와 소득재분배 효과 간 상관관계를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

## 소득세제의 소득재분배 효과 분석 및 시사점

### 제 I 장 서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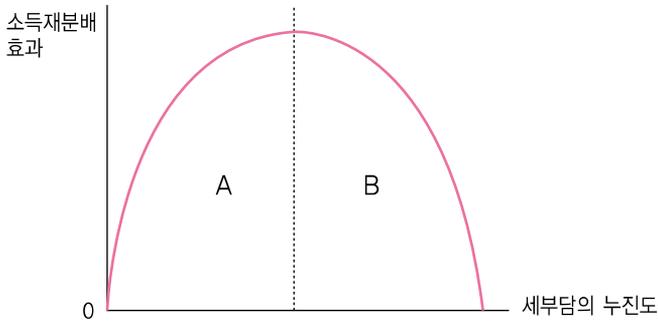


지난 2008~2012년 이명박 정부는 저소득계층부터 고소득계층까지 전 소득계층에 걸쳐 감세정책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것을 계획했으나,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글로벌 재정위기를 거치는 동안에 소득세의 세율과 비과세·감면 등에서 중산·서민층에 대해 감세를 계속 진행해 왔던 반면,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오히려 증세하였다. 2008년 세법개정은 소득세 최고세율을 2010년부터 35%(2008년)→33%로 2%p 인하하는 것이었으나, 2009년 세법개정 시 2년간 유보하여 2012년부터 다시 시행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2011년 세법개정은 오히려 2012년부터 소득세 과표구간을 4단계→5단계로 확대하고 최고세율을 38%로 3%p 인상하였다.

따라서 현행 우리나라 소득세제는 저소득계층보다 고소득계층에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많이 집중되어 있어 누진도가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다. 2009년 귀속소득 기준으로 근로소득세의 경우 상위소득자 11.95%가 전체 근로소득세의 84.73%, 종합소득세의 경우 상위소득자 7.18%가 전체 종합소득세의 85.50%를 부담하고 있다. 또한 면세자 비율은 근로소득세의 경우 40.25%, 종합소득세의 경우 28.16%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소득세제는 누진도가 상당히 높지만 소득재분배 효과에 있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소득세제의 누진도와 소득재분배 효과 간에는 역U자형 관계가 존재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그림 1>에서 B영역에 위치하는 것과 같이 소득세제의 누진도가 이미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어 소득재분배 효과는 오히려 낮아지고 있는 상태에 있을 것이라고 추정되고 있다.

<그림 1> 세부담의 누진도와 소득재분배 효과의 상관관계



자료: 김지영 외(2010)

만약 현행 우리나라 소득세제가 지난 정부의 조세정책 변화에 따라 높은 누진도에 낮은 소득재분배 효과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향후 복지재원 마련과 형평과세 실현을 위한 명분에서 새 정부가 추진 중인 고소득층 증세정책 등은 그 실효성 없이 기대치 않은 다른 부정적인 경제적 효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우리나라 소득세제의 누진도와 소득재분배 효과, 그리고 이 둘 간의 상관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이로부터 올해 새롭게 출범한 박근혜 정부의 소득세제 개편 방향에 대해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미시자료(micro-data)로서 1990~2012년 가계동향조사의 긴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여 소득세제의 누진도를 Kakwani 지수, 소득재분배를 지니계수 및 Atkinson 지수 등으로 추정한 후, 우리나라 소득세제의 누진도와 소득재분배 효과 간에 역U자형 상관관계를 규명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최근 우리나라 소득세제의 누진도와 소득재분배 효과의 정도를 파악하여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득세제 개편 방향에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조세·재정정책과 소득재분배 효과 관련 기존연구는 역사적으로 긴 시간을 가지며 수없이 많다.<sup>1)</sup> 박찬용(2003)은 가계동향자료를 이용하여 이전지출 및 직접세 부담으로 인한 세전과 세후 소득의 모수를 추정하였다. 성명재·박기백(2008)는 소득세와 이전지출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소득재분배 효과에 대한 분석에서 개인들이 부담하는 소비세와 정부지출을 통해 서비스형태로 수혜가 주어지는 현물급여의 소득계층별 분포 및 지니계수 변화율을 비교하여 소득재분배 효과를 분석하였다. 또한 여유진(2009)은 정부 및 기타 공공부문에 의해 이루어지는 공적부조, 공적연금과 조세정책이 소득분배구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소득세제 내 또는 관련 특정 제도의 도입 혹은 변화에 따른 소득재분배 효과를 분석한 기존연구도 다수 존재한다. 임병인(2010)은 소득공제 항목인 보험료 특별공제제도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분석하여 소득세제 내 특정 제도의 변경 시 예상되는 세부담 효과를 형평성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그리고 소득세제 관련 특정 제도의 도입 혹은 변경에 대한 분석으로서 다음의 근로장려세제(EITC) 관련 연구가 있다.<sup>2)</sup> 안중

1) 위와 같이 조세정책의 형평성 분석과는 대조적으로 조세정책의 효율성 분석으로서 전영준·현진권(2008)은 정책 모의실험(simulation)을 통해 가상으로 세제를 개편할 경우에 예상되는 각종 효과와 조세를 통한 소득재분배 정책의 효율비용을 분석하였다.

2) 참고로 다음의 연구는 근로장려세제의 타당성이나 실효성에 관해 분석하고 있다. 전영준(2004)는 근로장려세제 도입의 전제조건, 설계, 관련 정책과의 조화 및 이들 정책의 개편방안 등을 포함한 포괄적인 관점에서 동 제도 도입의 타당성에 대해 분석하였다. 전영준·남재량(2011)은 일반균형모형을

범·송재창(2006)은 정책 모의실험을 통해 한국형 EITC제도를 도입할 경우 계층 간 분배효과와 근로에 미치는 영향, 재정소요액 등을 추정하였다. 면세점 인하로 인해 발생하는 세수 증가분으로도 근로장려세제 도입에 따른 예산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고 소득분배 개선을 가능할 것으로 주장하였다. 임병인(2012)은 근로장려세제를 2011년 개정 전 (구)근로장려세제와 2012년 이후 적용된 (신)근로장려세제로 구분하여 소득재분배 효과를 비교·분석하였다. (신)근로장려세제에서는 수혜 가구가 많아지고, 연령이 높아지며 자녀가 없는 여성가구주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큰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근로장려세제는 소득세제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1.86%p 더 개선시켜 5.73%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보여 주었다.

한편 소득세제의 소득계층별 세부담과 소득재분배 효과 관련 기존연구로서 성명재(2011)는 지난 4개 행정부별로 재임기간 동안의 소득세제 개편이 소득계층별 세부담 및 소득재분배 효과에 미친 영향을 비교·분석하였다. 일반적 예상과 달리 세부담의 누진도의 소득재분배 효과는 부(-)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낮은 과세자비율로 인한 소득세 부담의 누진도·집중도가 지나치게 높다는 것을 주장하였다.<sup>3)</sup>

---

이용하여 정책 모의실험을 통해 근로장려세제, 실업보험,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최저임금제 등 저소득 근로자지원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분석하였다. 근로장려세제의 주요 수혜계층이 저소득층 근로자이며 취업자에게만 지급되어, 소득, 소비, 자산 분배를 개선시키며 왜곡 요인이 작아 다른 제도에 비해 저소득층 근로자의 후생을 증진시킬 수 있는 데 효과적임을 보였다.

3) 소득세제의 세부담 효과와 관련해서 성명재(2003)는 1990년대를 대상으로 소득분포 변화, 세법개정 및 과표양성화 효과 등으로 분해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조세정책과 소득재분배 효과에 대한 기존연구와 차별화되며 그 기여도를 가진다. 본 연구에서는 비교적 먼 과거부터 최근까지의 소득세제 변화를 반영하여 우리나라 소득세제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분석하고, 이에 따라 현행 소득세제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과거 우리나라 조세정책의 형평성 혹은 소득세제의 소득재분배 효과에 관한 선행 연구들이 다수 존재하지만 이들은 소득세나 이전지출 등의 소득재분배 효과에 대해 정치적 성향이 다른 정권들 간의 비교·분석 등을 통해 이루어졌다. 따라서 이들은 최근까지의 소득세제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로 우리나라 소득세제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 결점을 가진다. 그러나 본 연구는 최근 이명박 정부 5년, 그리고 현 정부가 들어선 이후 현재까지 최근의 소득세제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여 우리나라 소득세제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 정부에 소득세제 관련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 차별화된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들과 달리 보다 긴 분석기간과 세분화된 분석대상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소득세제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공한다. 최근 이명박 정부 5년 등을 포함하여 1990~2012년 기간 동안 각 연도별 소득세제 변화에 따른 누진도와 소득재분배 효과 변화를 전체적으로 분석할 뿐만 아니라 근로자 vs. 자영업자 등 근로형태별로 좀 더 면밀히 추가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바로 다음 장에서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우리나라 소득세제의 변화 및 현황과 현 정부의 소득

세제 개편 방향을 살펴본다. 그리고 우리나라 소득세제 변천에 따른 누진도 변화에 대해서 논의한다. 제3장은 우리나라 소득세제의 누진도와 소득재분배 효과 간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한 방법 및 자료를 소개하고, 제4장은 이를 바탕으로 실증분석을 하고 그 결과를 제시한다. 끝으로 제5장에서는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소득세제의 소득재분배 효과 분석 및 시사점

## 제Ⅱ장 우리나라 소득세제의 변천과 논의





## 2.1. 우리나라 소득세제의 변천

### 2.1.1. 과세체계

우리나라의 소득세제의 연혁은 일정시대 및 미군정하의 소득세제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만 건국후의 소득세제로서 정부수립 후 소득세법(법률 제33호)이 1949.07.15. 최초로 제정·시행되었다. 종래의 소득세에서 법인세를 분리하였고, 종합과세와 분류과세의 이원화로서 배당소득·부동산소득·사업소득·산림소득·근로소득은 일반소득세로 종합과세하며 사채이자소득·청산소득·퇴직소득 등은 특별소득세로 분류과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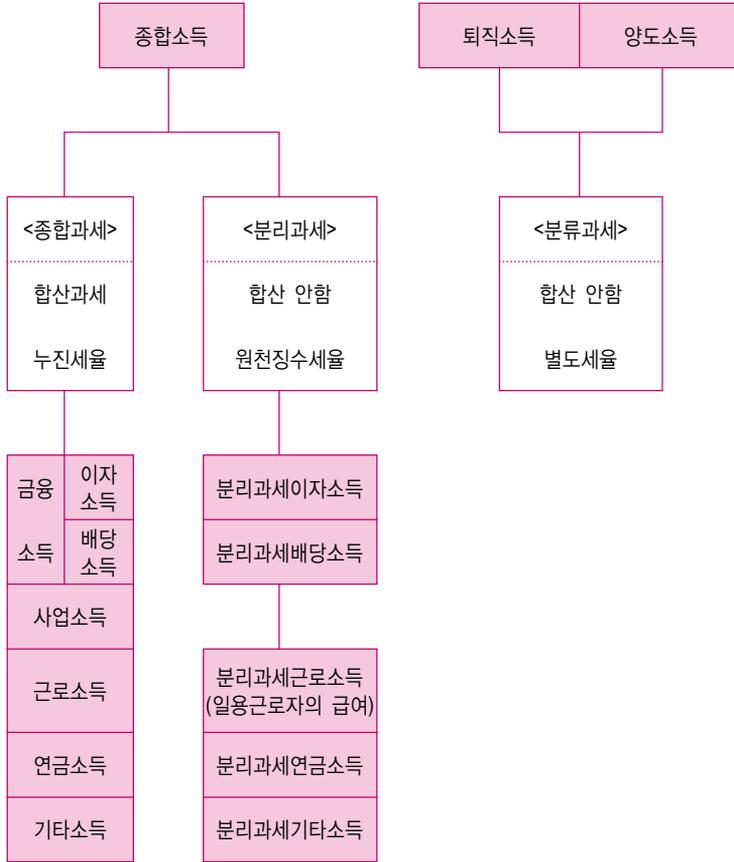
그리고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조성하기 위해 구 소득세법이 폐지되고 신 소득세법(법률 제821호)이 1961.12.08. 폐지제정, 1962.01.01. 시행되었고, 완전한 분류과세 전환으로서 배당이자소득·부동산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기타소득의 5개 유형은 분류과세하였다. 이후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해 소득세법(법률 제1966호)이 1967.11.29. 전부개정, 1968.01.01. 시행되었고, 분류과세와 종합과세의 이원화로서 종전의 완전한 분류과세를 단계적으로 종합과세로 전환하고자 분류과세 중 각 소득별 일정액 이상은 종합과세하였다.

현행 소득세제로의 개편은 소득세법(법률 제2705호)이 1974.12.24. 전부개정, 1975.01.01. 시행되면서 시작되었다. 전면적 종합과세로서 소득은 종합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산림소

득으로 구분하고, 이 중에서 종합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으로 하되 비과세소득·분리과세이자소득·분리과세배당소득과 일용자 근로소득은 제외하여 종합과세하였다. 이후 소득세법(법률 제4803호)이 1994.12.22. 전부개정, 1996.01.01. 시행되었고, 종합과세 확대로서 금융실명제의 실시로 인해 그 기반이 마련된 이자·배당소득(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가 실시되었다. 그런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 1997.12.31. 개정되어 1998~2000년 기간 동안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유보하였다가 1999년 말 관련 법이 개정되어 2001년부터는 재실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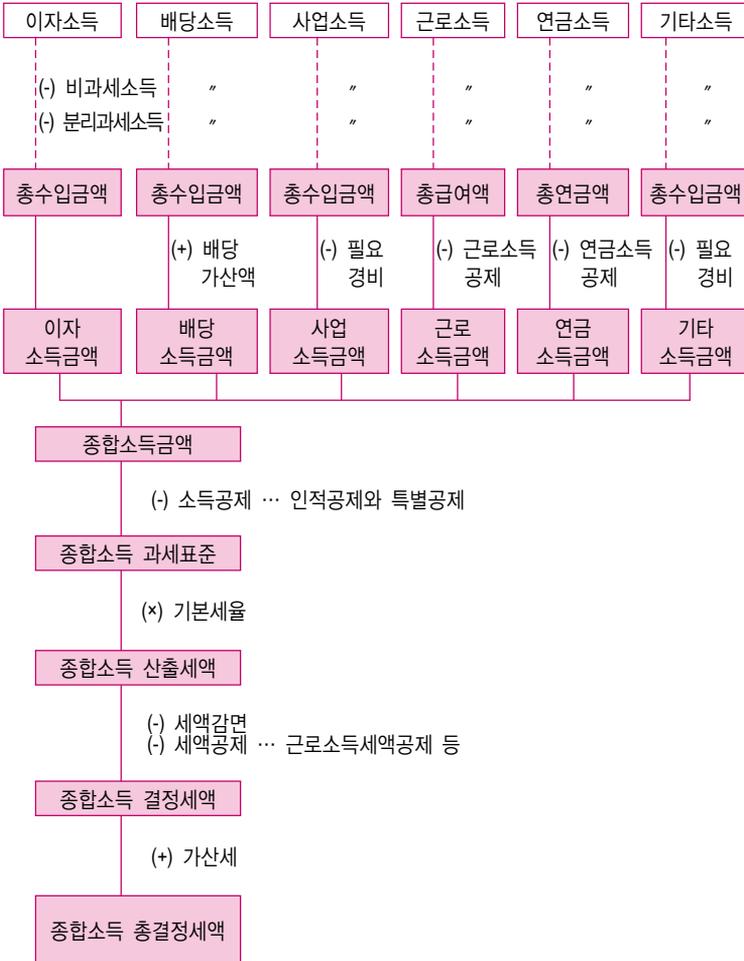
〈그림 2〉와 같이 현행 소득세제에서 소득은 종합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으로 구분되고 있으며, 이 중에서 종합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소득이다. 〈그림 3〉에서처럼 종합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의 원천 혹은 종류에 관계없이 모든 소득을 누진세율로 종합과세하나, 소득을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를 하고 나면 종합소득 신고시 합산하지 않는 소득은 원천징수세율로 분리과세한다. 그리고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각 소득의 원천에 따라 별도세율로 분류과세한다.

<그림 2> 소득세제의 소득구분과 과세체계



주: 우리나라의 소득세는 원칙적으로 개인단위로 과세됨. 다만 가족구성원 중 2인 이상이 공동사업자에 포함될 때 손익분배비율을 허위로 정할 경우 예외적으로 합산하여 과세됨.

<그림 3> 종합소득 과세체계



- 주1) 소득과 소득금액이 같지 않음. 소득은 총수입금액을, 소득금액은 배당가산액과 필요경비 등을 가감한 금액을 의미함.
- 주2) 종합소득금액 계산 시 비과세소득과 분리과세소득은 총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음.

### 2.1.2. 세율

1975년 종합과세가 전면적으로 시행되고 이에 따라 누진적 세율체계도 강화되어 16단계의 과세표준 구간에 8~70%의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되었다. 이후 1982년에는 17단계의 과표구간에 대해 6~60%의 세율, 1983~1988년 16단계의 과표구간에 대해 6~55%의 세율이 적용되었다. 이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명목소득이 증가하여 소득세가 급격히 증가하였기 때문에 비과세소득 및 공제액 확대로 누진적 세율체계를 완화하는 것과 함께 세율을 점차 낮춘 것이다.

1989~1990년에는 종전 16단계의 과표구간이 8단계로 단순화되고 이에 대한 세율도 5~50%로 인하여 적용되었다. 이후 최저세율과 최고세율 간 범위가 5~50%로 유지된 채 1991~1992년에는 과표구간이 5단계로 축소, 1993년에는 6단계로 다시 확대되었다. 그리고 1994~1995년에는 6단계의 과표구간에 대해 최고세율 인하로 5~45%의 세율이 적용되었다.

1996년 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라 그 기반이 마련된 이자·배당 소득(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가 실시되는 등 종합과세가 확대되어 1996~2001년에는 종전 6단계의 과표구간이 4단계로 축소되고 최저세율 인상과 최고세율 인하로 10~40%로 적용되었다. 이후 2002~2008년에는 과표구간이 4단계로 유지되었지만 세율은 2002~2004년에 9~36%, 2005~2008년에 8~35%로 점차 인하되었다.

2008년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당초 전 소득계층에 걸쳐 감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당해 세법개정을 통해 소득세 최고세

율을 2010년에 35%(2008년)→33%로 2%p 인하하고 나머지 저세율도 2009~2010년에 2%p 인하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재정건전성 확보라는 명분으로 2009년 세법개정에서 최고세율을 제외한 나머지 저세율은 그대로 인하하되 최고세율만은 2년간 유보하여 2012년에 다시 인하할 계획이었다. 이에 따라 과표구간은 2009~2011년에 종전과 같이 4단계로 유지되었으나, 세율은 2009년에 8~35%로 최저세율과 최고세율의 변화 없이 중간세율만 변화하였으며 2010~2011년에 6~35%로 최고세율의 변화 없이 나머지 저세율 모두가 변화하였다.

그러나 당초 계획과 달리 2011년 세법개정에서는 오히려 2012년부터 소득세 과표구간을 4단계→5단계로 확대하고 최고세율도 38%로 3%p 인상하였다. 이 결과로 2012년부터 2013년 현재까지 우리나라 소득세제는 5단계의 과표구간에 대해 6~38%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 기간 동안 세율 체계 측면에서만 본다면 저소득층에 대한 세부담은 낮아졌지만 고소득층에 대한 세부담은 오히려 높아졌다.

&lt;표 1&gt; 기본세율

(단위: 만 원)

1982		1983~1988		1989~1990	
●17단계(6~60%)		●16단계(6~55%)		●8단계(5~50%)	
과세표준	공제액	과세표준	공제액	과세표준	공제액
120 이하:	6%	180 이하:	6%	250 이하:	5%
120~180:	7.2 + 7%	180~250:	10.8 + 8%	250~500:	12.5 + 10%
180~240:	11.4 + 8%	250~350:	16.4 + 10%	500~800:	37.5 + 15%
240~300:	16.2 + 10%	350~480:	26.4 + 12%	800~1,200:	82.5 + 20%
300~390:	22.2 + 12%	480~630:	42 + 15%	1,200~1,700:	162.5 + 25%
390~480:	33 + 15%	630~800:	64.5 + 18%	1,700~2,300:	287.5 + 30%
480~600:	46.5 + 18%	800~1,000:	95.1 + 21%	2,300~5,000:	467.5 + 40%
600~840:	68.1 + 22%	1,000~1,250:	137.1 + 24%	5,000 초과:	1,547.5 + 50%
840~1,140:	120.9 + 26%	1,250~1,550:	197.1 + 27%		
1,140~1,500:	198.9 + 30%	1,550~1,900:	278.1 + 31%		
1,500~1,900:	306.9 + 34%	1,900~2,300:	386.6 + 35%		
1,900~2,400:	442.9 + 38%	2,300~2,900:	526.6 + 39%		
2,400~3,000:	632.9 + 42%	2,900~3,700:	760.6 + 43%		
3,000~3,800:	884.9 + 48%	3,700~4,700:	1,104.6 + 47%		
3,800~4,800:	1,252.9 + 50%	4,700~6,000:	1,574.6 + 51%		
4,800~6,000:	1,752.9 + 55%	6,000 초과:	2,237.6 + 55%		
6,000 초과:	2,412.9 + 60%				
1991~1992		1993		1994~1995	
●5단계(5~50%)		●6단계(5~50%)		●6단계(5~45%)	
과세표준	공제액	과세표준	공제액	과세표준	공제액
400 이하:	5%	400 이하:	5%	400 이하:	5%
400~1,000:	20 + 16%	400~800:	20+ 10%	400~800:	20 + 9%
1,000~2,500:	116 + 27%	800~1,600:	60+ 20%	800~1,600:	56 + 18%
2,500~5,000:	521 + 38%	1,600~3,200:	220+ 30%	1,600~3,200:	200 + 27%
5,000 초과:	1,471 + 50%	3,200~6,400:	700+ 40%	3,200~6,400:	632 + 36%
		6,400 초과:	1,980+ 50%	6,400 초과:	1,784 + 45%
1996~2001		2002~2004		2005~2007	
●4단계(10~40%)		●4단계(9~36%)		●4단계(8~35%)	
과세표준	공제액	과세표준	공제액	과세표준	공제액
1000 이하:	10%	1,000 이하:	9%	1,000 이하:	8%
1,000~4,000:	100 + 20%	1,000~4,000:	90 + 18%	1,000~4,000:	80 + 17%
4,000~8,000:	700 + 30%	4,000~8,000:	630 + 27%	4,000~8,000:	590 + 26%
8,000 초과:	1,900 + 40%	8,000 초과:	1,710 + 36%	8,000 초과:	1,630 + 35%
2008		2009			
●4단계(8~35%)		●4단계(8~35%)			
과세표준	공제액	과세표준	공제액		
1,200 이하:	8%	1,200 이하:	8%		
1,200~4,600:	96 + 17%	1,200~4,600:	72 + 16%		
4,600~8,800:	674 + 26%	4,600~8,800:	616 + 25%		
8,800 초과:	1,766 + 35%	8,800 초과:	1,666 + 35%		
2010~2011		2012~2013			
●4단계(6~35%)		●5단계(6~38%)			
과세표준	공제액	과세표준	공제액		
1,200 이하:	6%	1,200 이하:	6%		
1,200~4,600:	72 + 15%	1,200~4,600:	72 + 15%		
4,600~8,800:	582 + 24%	4,600~8,800:	582 + 24%		
8,800 초과:	1,590 + 35%	8,800~300,000:	1,590 + 35%		
		300,000 초과:	9,010 + 38%		

### 2.1.3. 비과세·감면

(근로소득공제) 종합소득 과세체계에서 종합소득으로 분류되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은 합산되어 세율을 적용받는다. 이로 인해 근로자의 근로소득과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은 소득이 동일할 경우에 동일한 세율이 적용된다.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 차감 후 세율이 적용되지만, 근로소득은 이 같은 필요경비 부재 혹은 입증 곤란 등으로 필요경비 차감과 유사한 근로소득공제 후 세율이 적용된다.

〈표 2〉에서 근로소득공제 변화는 1982~2000년에 3단계 → 2단계 → 3단계의 총급여액 구간에 따라 공제율이 비교적 단순하게 적용되었고, 근로소득금액에서 일정금액까지 공제한도가 허용되었다. 그러나 2001~2013년에는 4단계 → 5단계 → 7단계 → 5단계의 총급여액 구간에 따라 공제율이 이전 보다 세분화되어 적용되었고 공제한도도 폐지되었다. 2013년 현재 5단계의 총급여액 구간에서 500만 원 이하에 대해 80%, 4,500만 원 초과에 대해 5%의 공제율이 적용되고 있다.

&lt;표 2&gt; 근로소득공제

(단위: 만 원)

	1982		1983~1988		1989~1990	
총급여액 구간별 공제액	88 이하:	100%	94 이하:	100%	140 이하:	100%
	88~300:	88 + 20%	94~300:	94 + 20%	140~400:	140 + 25%
	300 초과:	130.4 + 10%	300 초과:	135.2 + 10%	400 초과:	205 + 15%
	일용근로자:	1.41/일	일용근로자:	1.5/일	일용근로자:	2.5/일
공제한도	170		170		230	
	1991~1992		1993		1994	
총급여액 구간별 공제액	230 이하:	100%	250 이하:	100%	270 이하:	100%
	230 초과:	230 + 30%	250 초과:	250 + 30%	270 초과:	270 + 30%
	일용근로자:	3.5/일	일용근로자:	3.5/일	일용근로자:	3.5/일
	공제한도	490		600		620
	1995		1996		1997~1998	
총급여액 구간별 공제액	310 이하:	100%	400 이하:	100%	500 이하:	100%
	310 초과:	310 + 30%	400 초과:	400 + 30%	500 초과:	500 + 30%
	일용근로자:	5/일	일용근로자:	5/일	일용근로자:	5/일
	공제한도	690		800		900
	1999~2000		2001		2002~2003.7	
총급여액 구간별 공제액	500 이하:	100%	500 이하:	100%	500 이하:	100%
	500~1,500:	500 + 40%	500~1,500:	500 + 40%	500~1,500:	500 + 45%
	1,500 초과:	900 + 10%	1,500~4,500:	900 + 10%	1,500~3,000:	950 + 15%
	일용근로자:	5/일	4,500 초과:	1,200 + 5%	3,000~4,500:	1,175 + 10%
공제한도	1,200		없음		없음	
	2003.7~2008		2009			
총급여액 구간별 공제액	500 이하:	100%	500 이하:	80%		
	500~1,500:	500 + 50%	500~1,500:	400 + 50%		
	1,500~3,000:	1,000 + 15%	1,500~3,000:	900 + 15%		
	3,000~4,500:	1,225 + 10%	3,000~4,500:	1,125 + 10%		
	4,500 초과:	1,375 + 5%	4,500 초과:	1,275 + 5%		
일용근로자:	8/일	일용근로자:	10/일			
공제한도	없음		없음			
	2010~2011		2012~2013			
총급여액 구간별 공제액	500 이하:	80%	500 이하:	80%		
	500~1,500:	400 + 50%	500~1,500:	400 + 50%		
	1,500~3,000:	900 + 15%	1,500~3,000:	900 + 15%		
	3,000~4,500:	1,125 + 10%	3,000~4,500:	1,125 + 10%		
	4,500~10,000:	1,275 + 5%	4,500 초과:	1,275 + 5%		
	8,000~10,000:	1,450 + 3%	일용근로자:	10/일		
10,000 초과:	1,510 + 1%					
일용근로자:	10/일					
공제한도	없음		없음			

(소득공제: 인적공제와 특별공제) 종합소득에 대한 세율이 적용되는 단계로서 종합소득 과세표준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인 종합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와 특별공제로 구성된 종합소득공제를 차감한 후 계산된다.

종합소득공제 중 인적공제는 1인당 일정한 금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로서 일부 세부적인 공제를 제외하면 모든 종합소득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러한 인적공제는 <부표 1>과 같이 1982~2013년 기간 동안 기본공제, 추가공제, 소수공제자추가공제, 다자녀추가공제로 구성되어 왔다. 이 중에서 기본공제는 기초공제(거주자 본인), 배우자공제, 부양가족공제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추가공제는 장애자공제, 경로우대공제, 부녀자세대주공제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과거에는 장애자공제만 적용되어 오다가 1989년에 65세 이상 기본공제대상자에 대한 경로우대공제가 신설되고 1991년에는 배우자가 없고 부양가족이 있는 부녀자에 대한 부녀자세대주공제가 신설되어 2013년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다. 또한 핵가족화에 따라 1996년에는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 제외)에 대해 소수공제자추가공제가 신설되어 적용되다가 2007년에 폐지되었다. 한편 소수공제자추가공제의 폐지와 함께 2007년 같은 해에는 출산장려와 다자녀가구에 대한 세제 지원 목적에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2인 이상의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일용근로자 제외)에 대해 다자녀추가공제가 신설되어 2013년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다. 이렇듯 인적공제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점차 확대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2013년 현재 인적공제 중 기본공제는 거주자 본인·배우자·부양가족·국민기초생활보장보호대상자·위탁아동 등에 대해 1인당 150만 원을 공제해 주고 있다. 추가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 중 경로자 70세 이상에 1인당 100만 원, 장애인에 1인당 200만 원, 부녀자세대주에 1인당 50만 원, 직계비속 6세 이하에 100만 원, 당해 출생한 직계비속·입양자에 200만 원을 공제해 준다. 그리고 다자녀추가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2인 일 경우 100만 원, 2인 초과일 경우 100만 원 + 초과 1인당 200만 원을 공제하고 있다.

한편 종합소득공제 중 특별공제는 인적공제가 거의 모든 종합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과 달리 일정요건을 갖춘 소득자에게만 적용하고 있으며 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표준공제가 적용된다. 특별공제 중 보험료공제·의료비공제·교육비공제·주택자금공제는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 제외)에게만 적용된다.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 제외)는 보험료공제·의료비공제·교육비공제·주택자금공제·기부금공제와 표준공제(100만 원) 중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근로소득이 없는 자로서 종합소득자(성실사업자 제외)는 기부금공제와 표준공제만을 같이 받는다. 다만, 성실사업자(A)는 의료비공제·교육비공제·기부금공제와 표준공제를 같이 받을 수 있으며 성실사업자(B)는 기부금공제와 표준공제(100만 원)만을 같이 받는다.

〈부표 2〉는 1982~2013년 기간 동안의 특별공제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특별공제는 1982년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특별공제, 창작소득특별공제의 4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2012년 현재 보

혐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주택자금, 연금보험료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초기와 현재의 공제항목을 비교하면 크게 주택자금과 연금보험료의 항목이 늘어난 것이 특징이다. 먼저 의료비공제를 살펴보면 적용대상은 근로자가구주,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에서 출발하여 의료비 중 총급여액의 5%를 초과하는 의료비에 대해 공제하였으나 1991년부터 현재 2012년에 이르기까지 3%로 조정되어 유지되고 있다. 공제한도는 1982년부터 1990년까지 연 24만 원이었으나 꾸준히 증가하여 1991년 100만 원, 1999년 200만 원, 2001년 300만 원, 2003년 500만 원, 2009년 700만 원에 이르고 있다.

교육비 공제는 학교의 입학금·수업료·기타공납금을 대상으로 1995년까지 1인당 12만 원 공제를 유지하다가 1996년 유치원·취학 전 아동에 대해 1인당 70만 원, 대학생 1인당 230만 원으로 현실화되었으며, 1999년 유치원·취학 전 아동 100만 원, 초·중·고등학생 150만 원, 대학생 300만 원으로 공제의 폭이 확대되었다. 2000년대에는 2003년 유치원생은 150만 원, 초·중·고등학생 200만 원 대학생 500만 원이었던 것이 2004년에는 고등학생이하에 대해 1인당 200만 원으로 통일되었으며 대학생 700만 원, 2009년에는 고등학생이하 1인당 300만 원, 대학생 1인당 900만 원까지 확대되었다.

창작소득 공제는 1990년까지 유지되다가 공제항목이 삭제되었으며, 1991년부터 주택관련 공제항목이 추가되었다. 신설된 무주택 근로자공제 항목은 총급여액 1,2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에 대해 연 100만 원 한도에서 공제되었으며, 1995년 무

주택 또는 국민주택규모이하 1주택자로 확대되어 원리금상환액 합계액의 40%로 변경되었다. 이후 공제한도는 지속적으로 변경되어 2004년 이래로 공제한도는 최대 1,200만 원까지 확대되었다. 2001년에 신설된 연금보험료는 근로자퇴직연금과 연금저축의 합산을 대상으로 꾸준히 증가하여 현재 연 400만 원까지가 공제한도이다.

(근로소득세액공제)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세율이 적용되면 종합소득 산출세액이 계산된다. 이러한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해진다. 세액공제 중 근로소득세액공제가 대표적이라 할 수 있는데 <표 3>은 근로소득세액공제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1982년 근로소득세액공제의 공제율은 월정급여 30만 원을 기준으로 한 2개 구간에 대하여 최고 20%의 근로소득 산출세액을 공제하도록 나누어져 있었다. 1983년에는 월정급여 구간이 3개로 확대되고 공제율도 최고 30%까지 확대되었다. 1990년에는 월정급여 구간을 다시 2개로 축소하되 그 기준이 100만 원으로 대폭 수정되었고, 공제율 또한 최저공제율 30%, 최고공제율 40%로 확대되었다. 1991년에는 월정급여를 기준으로 하던 공제율 적용 구간이 총급여액 기준으로 수정되면서, 월 66,660원이던 공제한도도 연 50만 원으로 조정되었다.

공제율 적용 기준은 1996년에 근로소득 산출세액 50만 원으로 수정되었고,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다. 1996년에는 20%였던 공제율이 대폭 상승되어 45%로, 2003년 7월에는 10%포인트 더 상승되어 55%로 대폭 인상되었고, 그와 동시에 산출세액 50만

원 초과 구간의 공제액 또한 22만 5천 원에서 27만 5천 원으로 상승되면서 공제범위가 크게 확대되었다. 그에 비하여 공제한도는 1991년에 50만 원으로 수정 된 이후에 1997년에 60만 원으로 인상되었다가 2002년, 2003년 7월에 40만 원, 50만 원으로 인하되는 등 소폭의 변화만 있어왔다. 그러다가 2010년에 총급여 8,000만 원부터 1억 원까지 6개 구간에 대하여 최고 50만 원을 공제하도록 공제한도가 세분화되었고, 2012년에는 또다시 근로자 모두 50만 원의 공제한도를 적용받도록 수정되었다. 2013년 현재 근로소득 산출세액의 2단계 구간에서 50만 원 이하와 일용근로자에 대해 55%, 50만 원 초과에 대해 30%의 공제율이 적용되고 있다.

&lt;표 3&gt; 근로소득세액공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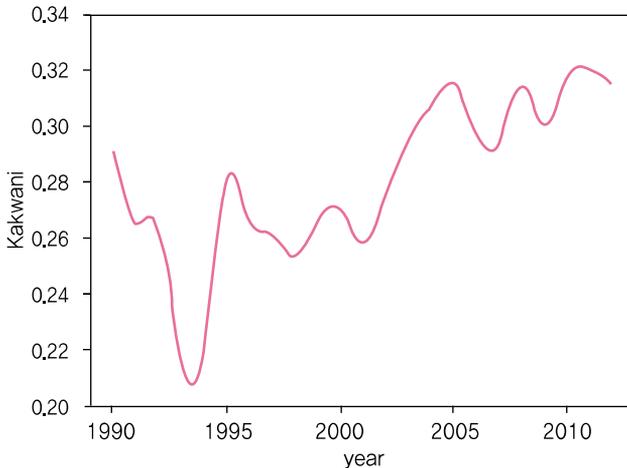
(단위: 만 원)

1982		1983 ~ 1988		1990	
월정급여	공제율	월정급여	공제율	월정급여	공제율
30 이하	20%	30 이하	30%	100 이하	40%
30~40	10%	30~40	20%	100 초과	30%
일용근로자	20%	40~50	10%		
		일용근로자	30%	공제한도	66,660/월
				일용근로자	40%
					한도:2.5/일
1991 ~ 1995		1996		1997 ~ 2001	
총급여	공제율	근로소득 산출세액	공제액	근로소득 산출세액	공제액
3,600 이하	20%	50 이하	45%	50 이하	45%
일용근로자	20%	50 초과	22.5 + 20%	50 초과	22.5 + 30%
		일용근로자	45%	일용근로자	45%
공제한도	50	공제한도	50	공제한도	60
2002 ~ 2003.7			2003.7 ~ 2009		
근로소득 산출세액	공제액	근로소득 산출세액	공제액	근로소득 산출세액	공제액
50 이하	45%	50 이하	55%	50 이하	55%
50 초과	22.5 + 30%	50 초과	27.5 + 30%	50 초과	27.5 + 30%
일용근로자	45%	일용근로자	55%	일용근로자	55%
공제한도	40	공제한도	50	공제한도	50
2010 ~ 2011			2012 ~ 2013		
근로소득 산출세액	공제액	근로소득 산출세액	공제액	근로소득 산출세액	공제액
50 이하	55%	50 이하	55%	50 이하	55%
50 초과	27.5 + 30%	50 초과	27.5 + 30%	50 초과	27.5 + 30%
일용근로자	55%	일용근로자	55%	일용근로자	55%
총급여	공제한도	공제한도	50	공제한도	50
8,000 이하	50				
8,000~8,500	40				
8,500~9,000	30				
9,000~9,500	20				
9,500~10,000	10				
10,000 초과	0				

## 2.2. 소득세제의 누진도 변화와 논의

〈그림 4〉는 1990~2012년 기간 우리나라 소득세제의 누진도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소득세제에 대한 세부담의 누진도는 Kakwani 지수로 측정되고 있다.

〈그림 4〉 소득세제의 누진도 변화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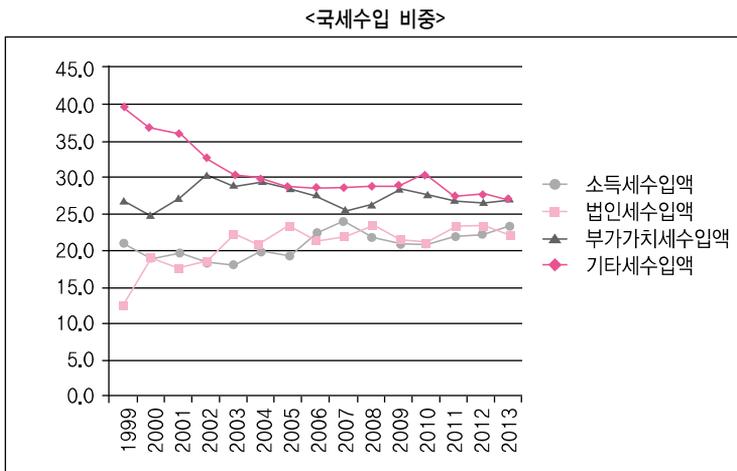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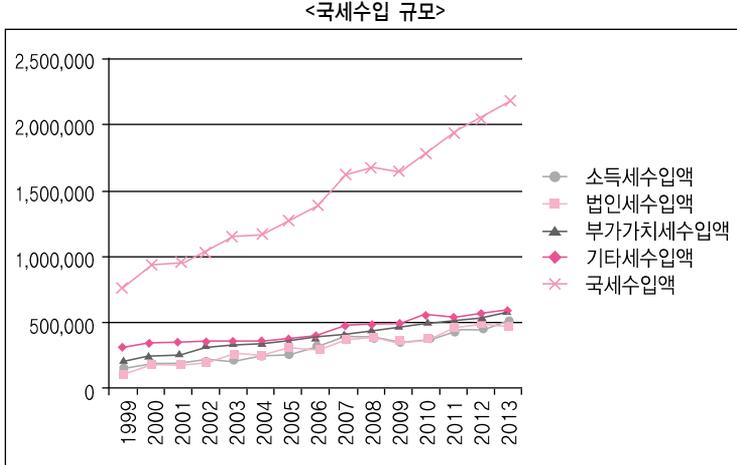


1990년 후반 다소 완화되었던 누진도는 2000년도 후반 다소 증감을 반복하는 모습을 보이나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위와 같이 2000년 이후 2012년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경우 소득세제의 누진도가 증가해 왔던 이유는 소득세제에서 비과세·감면이 지나치게 많아서 소득세제가 세수를 확보하는 세제로서 기능을 다하지 못하였기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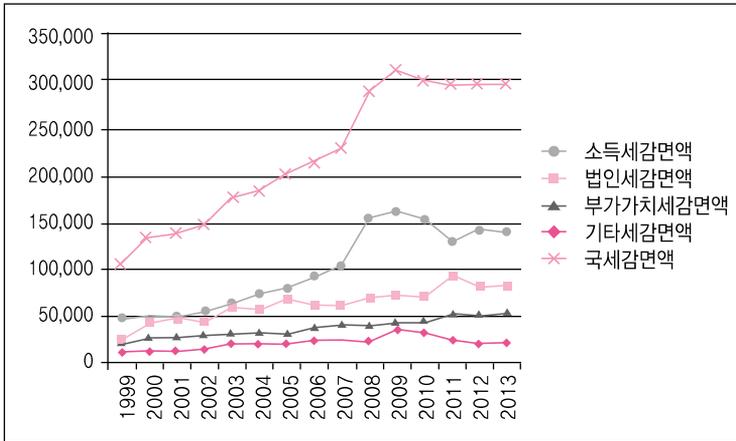
문이다.

〈그림 5〉는 1999~2013년 우리나라의 국세수입 및 감면의 규모와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우리나라의 세수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대형세 중 법인세제와 부가가치세제에 비해 소득세제는 그 감면 규모가 상당히 크다. 즉, 국세감면에 있어 소득세 감면이 크게 기여하고 있는 셈이다. 또한 2001년 이후 국세감면에서 법인세 감면과 부가가치세 감면이 차지하는 비중은 대체로 감소해 왔던 반면, 소득세 감면이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빠르게 증가해 왔다. 2012년 현재에는 국세감면 대비 소득세 감면의 비중은 47.5%로 국세감면의 약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반해 법인세 감면의 비중은 27.3%로 상당히 낮은 편이며, 부가가치세 감면의 비중은 17.8%로 소득세 감면 비중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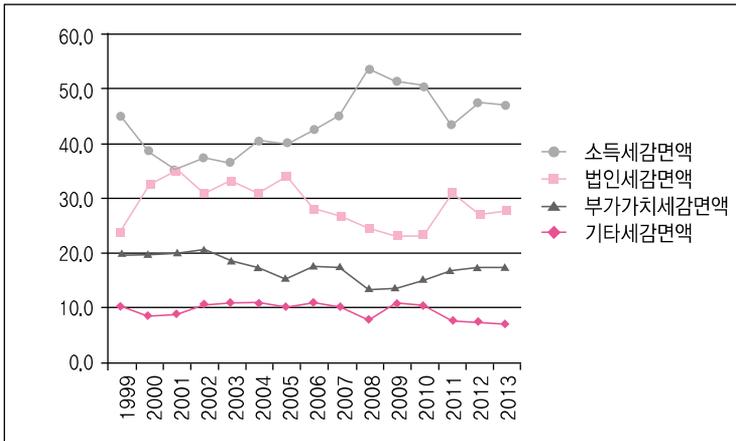
<그림 5> 국세수입 및 감면의 규모와 비중



<국세감면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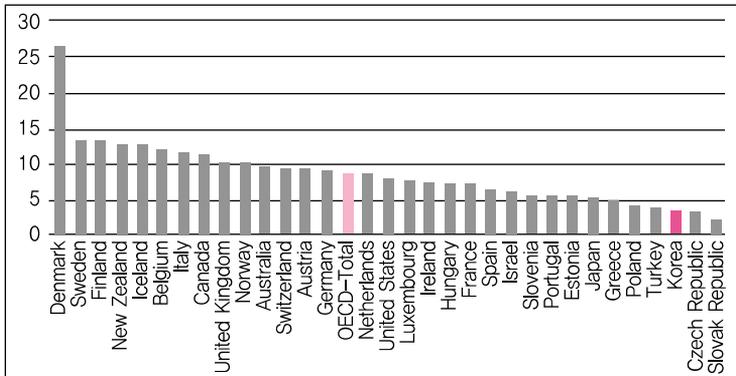
<국세감면 비중>



또한 <그림 6>에서와 같이 우리나라의 소득세 부담을 국제비교할 경우에도 우리나라의 소득세제가 세수를 확보하는 세제로서 기능을 다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09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소득세 부담률은 GDP 대비 3.6%로 OECD국가들(칠레와 멕시코 제외)의 평균 8.7%에 비해 매우 낮고 OECD 32개국 중 끝에서 3번째로 낮다. 주요국들의 소득세 부담률을 살펴보면 미국 8.1%, 영국 10.5%, 독일 9.4%, 프랑스 7.3%, 일본 5.4%로 우리나라에 비해 훨씬 높다. 그리고 일부 북유럽 복지국가들의 소득세 부담률은 덴마크 26.4%, 핀란드 13.3%, 스웨덴 13.5%로 매우 높은데, 이 국가들은 이원소득세제(dual income tax)를 적용하여 자본소득에 대해서는 저율과세하고 노동소득에 대해서는 무겁게 과세하고 있다.

<그림 6> 소득세 부담률 국제비교(2009년도)

(GDP 대비, 단위 : %)



주: 소득세 부담률에서 칠레와 멕시코에 대한 자료가 제공되지 않아 제외되었음.  
 자료: OECD(2012)

위에서 보았듯이 다른 세제보다 소득세제의 비과세·감면 비중이 매우 높은 것은 우리나라의 소득세제는 근로자와 자영업자간 형평과세를 실현한다는 목적으로 자영업자에 비해 근로자에게 더 많은 공제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9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율은 30.0%로 OECD 평균 15.8%보다 거의 2배 정도 높다. 근로자의 경우와 달리 자영업자의 소득은 파악되기가 어려워 탈세로 연결되기가 쉽다. 이에 따라 동일한 소득에 대해 근로자와 자영업자 간에 소득세 부담의 차이가 발생될 수 있다. 이를 조정하기 위해 근로자에게는 근로소득공제, 교육비·의료비 등 특별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허용하지만, 자영업자에게는 근로소득공제와 근로소득세액공제를 배제하고 특별공제도 성실사업자에 한해 허용한다.

이러한 소득세제의 지나친 비과세·감면으로 인해 면세점이 매우 높고 과세기반이 상당히 좁아서 소득세 부담이 고소득층에 집중되어 있다. 2009년 귀속소득 기준으로 근로소득세의 경우 상위소득자 11.95%가 전체 근로소득세의 84.73%, 종합소득세의 경우 상위소득자 7.18%가 전체 종합소득세의 85.50%를 부담하고 있다. 면세자 비율은 근로소득세의 경우 40.25%, 종합소득세의 경우 28.16%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제 하에서는 소득세 부담의 의무를 지지 않는 면세자들이 많아 소득세 부담이 고소득자에게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소득세제의 누진도가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다.

<표 4> 근로 및 종합소득세 부담 분포(2009년 귀속)

(단위: 명, 백만 원, %)

10분위별 <sup>1)</sup>	근로소득세				종합소득세			
	인원 <sup>2)</sup>	결정세액		인원 <sup>4)</sup>	결정세액		누적 비중 <sup>5)</sup>	
		누적 비중 <sup>3)</sup>	누적 비중		누적 비중 <sup>5)</sup>	누적 비중		
0~10%	854,117	5.97	8,755,316	68.12	357,081	7.18	10,002,595	85.50
10~20%	854,117	11.95	2,134,418	84.73	357,081	14.37	952,579	93.64
20~30%	854,117	17.92	972,341	92.30	357,081	21.55	360,302	96.72
30~40%	854,117	23.90	408,846	95.48	357,081	28.74	160,756	98.09
40~50%	854,117	29.87	227,274	97.25	357,082	35.92	92,987	98.89
50~60%	854,117	35.85	151,919	98.43	357,082	43.10	59,135	99.39
60~70%	854,117	41.82	100,944	99.22	357,082	50.29	38,456	99.72
70~80%	854,117	47.80	59,650	99.68	357,082	57.47	22,670	99.92
80~90%	854,117	53.77	31,362	99.92	357,082	64.65	8,164	99.99
90~100%	854,115	59.75	9,786	100.00	357,082	71.84	1,614	100.00
전체	8,541,168	59.75	12,851,857	100.00	3,570,816	71.84	11,699,258	100.00

주: 1) 10분위는 근로소득세의 경우 과세표준, 종합소득세의 경우 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분류

2) 근로소득 연말정산 지급명세서신고자 중 과세대상자

3) 근로소득 연말정산 지급명세서신고자 14,294,993명(=과세대상자+과세미달자) 대비

4)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자. 단순경비율에 의한 신고자로서 과세미달자와 비사업자로서 과세미달자는 제외

5) 납세인원 4,970,619명(=과세미달추정인원+확정신고대상인원) 대비. 사업자(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자)를 기준으로 집계하였으며, 비사업자는 제외

자료: 국세통계연보(2010)

### 2.3. 현 정부의 소득세제 개편 방향

지난해 총·대선을 치른 후 2012년 세법개정은 재정건전성 확보와 복지재원 마련, 소득재분배 제고라는 배경 하에서 고소득층에 대해 비과세·감면을 축소하여 세부담을 높였다. 고소득자에 대한 과도한 소득공제 적용을 배제한다는 이유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지정기부금, 청약저축, 우리사주조합·창투조합 등 출자,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에 대해 소득세 특별공제 종합한도(2,500만 원)를 신설하였다. 그리고 납부여력이 있는 개인사업자의 과도한 비과세·감면 혜택을 축소한다는 이유로 개인사업자의 최저한세율을 감면 전 산출세액 3,000만 원 이하분에 대해 35%로 현행과 같이 유지하는 반면, 감면 전 산출세액 3,00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5%→45%로 인상하였다.

<표 5> 총·대선 후 2012년 세법개정안의 주요 내용

구분	현행	수정안
고소득 개인사업자 최저한세율 인상(조세특례제한법 §13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 사업소득 최저한세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면 전 산출세액의 35%</li> </ul> </li> <li>※ 소득세 최저한세율 관련 정부안 없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 사업소득 최저한세율 인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면 전 산출세액 3,000만 원 이하분: 35%(현행과 같음)</li> <li>○ 감면 전 산출세액 3,000만 원 초과분: 45%</li> </ul> </li> </ul>
소득세 특별공제 종합한도 신설(조세특례제한법 §132의2)	<p style="text-align: center;">&lt;신 설&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득세 특별공제 종합한도 관련 정부안 없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득세 특별공제 종합한도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제한도: 2,500만 원</li> <li>○ 한도포함 소득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지정기부금, 청약저축, 리사주조합·창투조합 등 출자, 신용카드</li> <li>○ 한도제외 소득공제: 인적공제, 근로소득공제, 4대 보험료, 연금저축, 법정기부금, 장애인관련 비용 등</li> </ul> </li> </ul>

이후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는 새정부의 대선공약 이행계획 및 국정과제로서 고소득층에 대한 과표구간 조정 및 비과세·감면 축소를 통해 세부담을 높이면서 전 계층에 대한 실효세율을 상향조정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구체적인 제안 내용은 최고세율 구간을 3억 원 초과에서 2억 원 초과로 변경하고, 개인사업자에 대한 소득공제한도를 2,500만 원, 최저한세율 45%로 강화함으로써 고소득 개인사업자의 공제한도 추가 축소한다는 것과 소득세 면세점을 낮춰 소득세 면제 비율을 낮춘다는 것이다.

올해 2013년 세법개정안은 세입기반 확충과 과세형평 제고라는 명분 아래 직접적으로 소득세 과표구간과 세율을 조정하지 않는 대신, 간접적으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여 고소득층에 소득세 부담을 더욱 집중시키고 있다. 소득을 창출하기 위한 필요경비적인 측면 등을 감안하여 근로소득공제, 기본공제, 공적연금·건강보험료 공제는 현행 소득공제로 유지하나, 인적공제 중 자녀관련 소득공제는 자녀세액공제로 통합하고, 기타 인적공제는 현행 유지하나 2014년 이후 세액공제로 전환할 계획이다. 다만, 근로소득공제는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에 따라 소득계층간 세부담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 조정한다는 것이다. 또한 특별공제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지원항목에 따라 공제율을 15%와 12%로 나누어 이원화할 계획이다.

&lt;표 6&gt; 2013년 세법개정안 중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관련 내용

구 분	현 행		개 정 안	
	소득공제 유지	<input type="checkbox"/> 근로소득공제(소득세법 §47①) <input type="checkbox"/> 총급여의 5~80% 공제		<input type="checkbox"/> 근로소득공제 조정
	총급여	공제율	총급여	공제율
	500만 원 이하	80%	500만 원 이하	70%
	500만~1,500만 원 이하	50%	500만~1,500만 원 이하	40%
	1,500만~3,000만 원 이하	15%	1,500만~4,500만 원 이하	15%
	3,000만~4,500만 원 이하	10%	4,500만~1억 원 이하	5%
	4,500만 원 초과	5%	1억 원 초과	2%
	<input type="checkbox"/> 기본공제 <input type="checkbox"/> 본인 및 부양가족 1인당 150만 원 공제 <input type="checkbox"/> 공적연금·건강보험 공제 <input type="checkbox"/> 국민·공무원연금 등 본인 부담금, 건강보험 등 보험료 전액공제		<적용시기> '14.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에 맞추어 근로소득 공제를 일부 조정	
자녀관련 인적공제제도의 세액공제 전환(소득세법 §51①, §51의2①→§59의2 신설)	<input type="checkbox"/> 자녀관련 소득공제 <input type="checkbox"/> 6세 이하 자녀양육비: 1명당 100만 원 <input type="checkbox"/> 출생·입양공제: 출생·입양 당해연도 1명당 200만 원 <input type="checkbox"/> 다자녀추가공제 - 자녀 2명: 100만 원 - 자녀 2명 초과: 100만 원 + 2명 초과 1명당 200만 원		<input type="checkbox"/> 자녀세액공제로 통합 <input type="checkbox"/> 자녀 1~2명: 1명당 15만 원 <input type="checkbox"/> 자녀 2명 초과: 30만 원 + 2명 초과 1명당 20만 원 <적용시기> '14.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자녀장려세제(CTC)와 연계하여 중복적용을 배제하고 자녀양육 관련 각종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	
기타 인적공제의 '14년 이후 세액공제로 전환	<input type="checkbox"/> 기타 인적공제 <input type="checkbox"/> 장애인: 장애인 1명당 200만 원 <input type="checkbox"/> 경로우대자: 70세 이상 경로자 100만 원 <input type="checkbox"/> 부녀자공제(소득세법 §51①) - 적용대상: 배우자가 없고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		<input type="checkbox"/> 현행유지, '14년 이후 세액공제로 전환  <input type="checkbox"/> 다만, 부녀자공제 적용대상 조정 - (좌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lt;신 설&gt;</li> <li>- 공제금액: 50만 원</li>   <li>○ 한부모공제 한부모 100만 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득금액 1,500만 원 이하자에 한해 적용(총급여 2,500만 원 수준)</li> <li>- (좌 동)</li> <li>&lt;적용시기&gt; '14.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li> <li>* EITC와 중복적용을 배제하여 EITC를 적용받지 못하는 저소득 여성의 사회활동에 대한 지원제도로 운영</li> </ul>
<p>특별공제제도 등의 세액공제 전환(소득세법 §52①,②,③, ⑥, → 소득세법 §59의4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86의3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별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료비 소득공제: 총급여 3% 초과 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도: 700만 원, 본인·장애인·경로자는 없음</li> </ul> </li> <li>○ 교육비 소득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도: 대학생 900만 원, 초·중·고등학생 300만 원, 본인은 없음</li> </ul> </li> <li>○ 기부금 소득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도: 법정기부금은 소득금액 100%, 지정기부금은 소득금액 30%(종교 10%)</li> </ul> </li> <li>○ 보장성보험료 소득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도: 100만 원</li> </ul> </li> <li>○ 표준소득공제: 근로자 100만 원, 사업자 60만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별공제 미신청 근로자 등 적용</li> </ul> </li> </ul> </li> <li>□ 연금저축·퇴직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도: 400만 원</li> </ul> </li> <li>□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도: 300만 원</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액공제로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제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5%: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li> <li>- 12%: 연금저축, 보장성보험료,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li> </ul> </li> <li>○ 현행 소득공제 한도 등은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별공제 종합한도: 주택자금 공제, 우리사주 조합 출연금 등 일부 소득공제가 존치되므로 현행공제 한도(2,500만 원)유지</li> <li>- 사업자의 경우 기부금은 세액공제 받지 않고 필요경비에만 산입</li> </ul> </li> <li>○ 표준세액공제: 근로자 12만 원, 사업자 7만 원</li> </ul> </li> <li>&lt;적용시기&gt; '14.1.1. 이후 지출분부터 적용(다만, '13년 말까지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 이월공제금은 종전과 같이 소득공제)</li> <li>* 소득공제를 단계적으로 세액공제로 전환</li>   <li>□ 14년 이후 전환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투조합 등 출자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우리사주 조합출연금, 주택자금 공제</li> </ul> </li> </ul>
<p>정치자금 기부금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조세특례제한법 §76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당 등에 기부한 정치자금 소득공제 또는 손금산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만 원 이하: 기부금의 100/110 세액공제</li> <li>○ 10만 원 초과분: 소득공제 또는 손금산입</li> <li>* 공제한도: 소득금액</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좌 동)</li> <li>○ 공제율 15%로 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자는 손금산입</li> <li>* 공제한도: 소득금액 100%</li> </ul> </li> </ul>

		<적용시기> '14.1.1. 이후 기부금 부터 적용 *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 됨에 따른 정비					
세액공제 방식 전환에 따른 성실사업자 공제방식 정비(조세특 례제한법 §122의3①)	□ 성실사업자 또는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한 사업자는 종합소득에서 교육비 또는 의료비 공제 허용 ○ 적용기한: '15.12.31.		□ 교육비 또는 의료비에 대하여 세액공제(공제율 15%) 허용  ○ (좌 동) <적용시기> '14.1.1 이후 지출분부터 적용 *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 됨에 따른 정비				
연금저축의 연금 외 수령시 세율 인하(소득법 §129①)	□ 계좌 인출 시 원천징수세율 ○ 연금 수령 시		□ 원천징수세율 변경 ○ (좌 동)				
	<b>구분</b>		<b>세율</b>				
	70세 미만		5%				
	80세 미만, 종신형 수령		4%				
	80세 이상, 퇴직소득 원천		3%				
	○ 연금 외 수령 시		○ 자기부담분 및 운용수익 부분 에 대한 세율 인하				
	<b>적립원천금</b>	<b>소득 구분</b>	<b>세율</b>	<b>적립원천금</b>	<b>소득 구분</b>	<b>세율</b>	
	통상적인 경우	기타	20%	통상적인 경우	기타	15%	
	부득이한 경우		15%	부득이한 경우		12%	
			<적용시기> '14.1.1. 이후 연금 외 수령분부터 적용 * 연금 외 수령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 조정				

한편 정부는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과 관련하여 근로소득 계층의 거센 반발로 인해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및 7,000만 원 이하 구간에 대해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를 상향조정하여 당초 발표한 2013년 세법개정안을 수정하였다. 정부는 이에 따라 총급여 3,450만 원부터 5,5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소득세 부담이 증가하지 않으며 총급여 5,500만 원부터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소득세 부담이 2~3만 원으로 거의 늘어나지 않는다고 발표하였다.

<표 7> 2013년 세법개정안 수정 내용

현 행		개 정 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로소득세액공제(소득세법 §59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로자에 대해서는 그 근로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좌 동)</li> </ul> </li> </ul>
<b>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b>	<b>공제액</b>	
50만 원 이하	산출세액의 55%	
50만 원 초과	27만 5,000원 + 50만 원 초과 금액의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제한도: 50만 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의 공제한도: 50만 원 (현행) → 66만 원 조정</li> <li>○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의 공제한도: 50만 원 (현행) → 63만 원 조정</li> </ul>

소득세제의 소득재분배 효과 분석 및 시사점

제III장 분석방법 및 입력데이터





### 3.1 분석방법

#### 3.1.1. 누진도와 소득재분배 효과 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이론적 설명

누진도와 소득불평등과의 상관관계를 도출하기 위한 이론적 배경을 설명하고자 한다. 먼저 소득재분배효과에 대해 설명하고, 누진도와 상관관계에 대해 도출한다. 다음과 같이 소득재분배효과는 평균재분배효과와 세수규모의 곱으로 표현된다.

$$TRE = \frac{TRE}{R} \times R = ARE \times R \quad (1)$$

여기서  $TRE$ 는 소득재분배효과,  $ARE$ 는 평균소득재분배효과,  $R$ 은 세금의 합인 세수규모를 의미한다. (1)의 식을 미분한 뒤  $\Delta ARE$ 로 나누면 다음 식(2)와 같이 정리된다.

$$\frac{\Delta TRE}{\Delta ARE} = R + ARE \frac{\Delta R}{\Delta ARE} \quad (2)$$

$\frac{\Delta TRE}{\Delta ARE}$ 의 관계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식(2)의 우변에 있는 두개 항의 부호에 의존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frac{\Delta R}{\Delta ARE}$ 은 음(-)

의 값을 가지므로  $\frac{\Delta TRE}{\Delta ARE}$ 의 부호는  $R$ 과  $ARE \frac{\Delta R}{\Delta ARE}$ 의 크기에 의하여 결정된다. 즉, 세수규모( $R$ ) 언제나 양(+)<sup>1</sup>의 값을 가지고  $\frac{\Delta R}{\Delta ARE}$ 가 음(-)의 값을 가지면, 세부담을 나타내는 평균재분배효과가 커질수록  $\frac{\Delta TRE}{\Delta ARE}$ 의 값은 감소하게 된다. 상

대적 크기를 비교하면 만약  $ARE > \frac{-R}{\frac{\Delta R}{\Delta ARE}}$ 인 경우  $\frac{\Delta TRE}{\Delta ARE}$

는 음(-)의 값을,  $ARE < \frac{-R}{\frac{\Delta R}{\Delta ARE}}$ 인 경우  $\frac{\Delta TRE}{\Delta ARE}$ 는 양(+)

의 값을 갖게 된다. 즉 음(-)의 값은 누진도와 소득재분배효과의 상관관계가 부(-)의 상관관계를 의미하며 양(+)<sup>2</sup>의 값은 두 관계가 정(+)<sup>3</sup>의 관계가 성립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관계를 묘사하고 있는 것이 앞의 <그림 1>이다.

이와 같은 소득재분배 개념과 함께 세부담의 역진적 혹은 누진적 개념에 대해 논의를 확장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실효세 부담은 세부담을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정의 된다. 소득이 증가할 때 실효세부담률이 상승하면 세부담이 누진적이며, 반대로 실효세부담률이 하락하면 세부담은 역진적이라고 한다. 따라서 실효세부담률을 소득으로 미분하여 차분형태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frac{\Delta EFT}{\Delta Y} = \frac{\frac{\Delta TX}{\Delta Y} - \frac{TX}{Y}}{Y} \quad (3)$$

여기서,  $EFT$ 는 실효세부담률,  $Y$ 는 소득,  $TX$ 는 세부담을 의미하며, 다른 차분변수는 앞에  $\Delta$ 를 삽입한 것이다.

세부담구조가 누진적인 경우는 식(3)은 양(+)의 값을, 역진적이면 음(-)의 값을 비례적이면 0의 값을 가지게 된다. 이를 정리하여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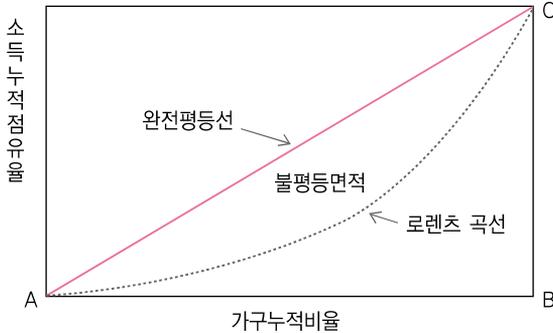
$$\frac{\Delta EFT}{\Delta Y} = \frac{\frac{\Delta TX}{\Delta Y} - \frac{TX}{Y}}{Y} \begin{matrix} > \\ = \\ < \end{matrix} 0 \quad \text{if} \quad \frac{\Delta TX}{\Delta Y} \begin{matrix} > \\ = \\ < \end{matrix} \frac{TX}{Y} \quad (4)$$

여기서  $\frac{\Delta TX}{\Delta Y}$ 은 소득변화에 따른 세부담의 변화를 나타내는 한계세율,  $\frac{TX}{Y}$ 은 전체세부담을 소득으로 나눈 개념인 평균세율을 나타낸다. 따라서 일정한 소득구간에 대해 한계세율이 평균세율보다 크면 소득구간 A에서 소득이 증가할 때 해당 세목의 실효세부담률은 상승하게 된다. 다음은 소득재분배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소득불평등지수, 누진도를 대표하는 kakwani지수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 3.1.2. 불평등도 지수

소득불평등은 개인 혹은 가계 간에 소득이 균등하지 못한 상태를 말한다. 소득불평등의 정도는 일반적으로 지니계수, 5분위 배율, 상대적 빈곤율 등 다양한 지표를 이용하여 측정되며, 본 연구에서는 대표적인 지수인 지니계수를 가지고 설명하고자 한다. 지니계수는 로렌츠 곡선을 이용하여 측정된다. <그림 7>처럼 X축(가로축)에 가구를 소득크기 순으로 나열하여 누적비율로 표시하고 Y축(세로축)에 이들의 소득누적 점유율을 표시하여 이를 대응시킨 점들이 만들어 내는 곡선이 로렌츠곡선이다. 지니계수는 이 로렌츠 곡선과 완전 평등선을 나타내는 대각선 사이의 면적을 종축 횡축으로 둘러싸인 삼각형 면적( $\triangle ABC$ )으로 나눈 값으로 계산된다. 지니계수 값의 범위는 0과 1사이의 값으로 나타나며, 지니계수 값이 클수록 소득불평등도가 커짐을 의미한다. 특히 0의 값은 완전한 평등, 즉 모든 가구가 동일한 소득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1의 값은 완전한 불평등, 즉 한 가구가 모든 소득을 갖고 나머지 가구는 0의 소득을 갖는다는 것을 설명한다.

&lt;그림 7&gt; 로렌츠 곡선과 지니계수



좀 더 수학적인 표현방법을 이용하여 지니계수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먼저 절대적, 상대적 지니계수를 이해하기 위해 우선 평균격차(mean difference)의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식(5)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이산형인 경우 확률분포로부터 나온 확률변수의 두 독립된 값으로 표현 가능하다.

$$d = \sum_{i=1}^n \sum_{j=1}^n \pi_i \pi_j |\mu_i - \mu_j| \quad (5)$$

여기서  $\mu_j$ 는 평균소득,  $\mu_y$ 는  $i$ 가구의 소득,  $\pi_i$ 는  $\mu_y$ 가 일어난 확률이다. 평균격차( $d$ )는 확률분포로부터 나온 확률변수의 두 독립된 값에 대한 차이 값의 절대치의 평균이다. 이 값은 절대적 소득불평등도를 측정하는 절대적 지니계수의 2배가 된다. 상대적 소득불평등도를 측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값을 평균

값과 2로 나누어 주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지니계수가 된다.

또한 평균격차는 소위 지니평균격차(Gini mean difference) 혹은 절대평균격차(absolute mean difference) 라고 불리며, 다음과 같이 절대적 소득불평등도 (A Gini)를 측정하는 절대적 지니계수의 2배 값을 가지는 형태로 정의된다.

$$A \text{ Gini} = \left\{ \frac{1}{2} \sum_{i=1}^n \sum_{j=1}^n \pi_i \pi_j |\mu_i - \mu_j| \right\} \quad (6)$$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지니계수는 상대적 소득불평등도를 측정하는 (상대적) 지니계수(R Gini)로서 절대적 지니계수를 평균값으로 나누어 주어 정규화한 값으로 다음과 같이 표시된다.

$$R \text{ Gini} = \left\{ \frac{1}{2\delta} \sum_{i=1}^n \sum_{j=1}^n \pi_i \pi_j |\mu_i - \mu_j| \right\} \quad (7)$$

또한 평균격차를 그 집단의 평균값( $\delta$ )으로 나누어준 수치를 상대적 평균격차(relative mean difference)이며, 이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상대적) 지니계수의 2배 값을 가진다.

(6)과 (7)의 두 개의 식을 살펴보면 절대지니(A Gini)는 상대지니(R Gini)에 평균을 곱한 값으로 정의되기 때문에 소득평균을 성장의 정도로 사용한다면, 성장하는 경우 절대지니는 대부분 증가하게 된다.

### 3.1.3. 누진도 지수

소득세제의 누진도를 평가하는 지수는 대표적으로 Kakwani (1977, 1980)지수가 있다. 이를 간단히 표현하면 조세집중도지수와 세전소득 기준 지니계수를 이용하여 누진성 혹은 역진성을 판단한다.

$$K_t = C_i - G_b \quad (8)$$

여기서  $K_t$ 는 Kakwani지수,  $C_i$ 는 조세집중도지수,  $G_b$ 는 (세전)지니계수, 그리고  $G_a$ 는 (세후)지니계수를 의미한다. 식 (8)을 분해하면 다음과 같다.

$$\begin{aligned} G_a &= G_b - \frac{t}{(1-t)} K_t = G_b - \frac{t}{(1-t)} \sum_{i=1}^n \left(\frac{t_i}{t}\right) K_i \\ &= G_b - \frac{\sum_{j=1}^n t_j K_j}{(1-t)} \end{aligned} \quad (9)$$

Kakwani 지수인  $K_t$ 의 판정기준은 산출된 지수값이 0보다 크면 누진적(progressivity)으로 재원이 조달되고 있으며, 0보다 작으면 소득배분이 역진적이며, 0과 같으면 비례적이란 의미를 가진다. 세후지니는 개별조세의 누진성지표의 가중평균이라는 특성이 반영되어 식(9)의 마지막항으로 정리된다.

### 3.2. 입력데이터

구체적으로 누진도와 소득재분배효과를 계산하기 위해 고려할 수 있는 미시자료로 대표적인 가계소비조사 자료인 가계동향조사, 재정패널, 그리고 노동패널을 고려할 수 있다. 재정패널 조사는 소득변수가 가구단위가 아닌 가구원 소득으로 구분되며 종합소득신고 후의 세액자료에 대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시계열이 짧고 대표성 또한 가계동향조사보다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다른 대표적인 가계조사자료인 한국노동패널자료는 미국의 대표적인 노동패널인 PSID와 유사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1997년부터 조사된 패널자료로, 재정패널보다는 긴 시계열을 가지고 있으나 소득이나 세액자료가 부족한 것이 단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분석에 이용할 자료로 통계청에서 발표되는 가계동향조사를 이용하고자 한다. 가계동향조사는 가장 큰 장점은 소득에 대해 긴 시계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 조사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미시가계 소비조사로 크게 세 가지의 큰 범주로 구성원의 인적사항, 소득, 소비변수의 다양한 변수로 구성되어 있다. 연구에서 이용하고자 하는 표본기간은 긴 시계열 분석을 위한 원시자료제공이 가능한 1990년부터 2012년까지의 자료를 분석대상으로 한다.

표본기간을 포함한 가계동향조사의 특징을 살펴보면 2002년 이전까지 조사대상을 도시가구만 한정하여 도시가계조사로 명

명되었으나, 그 이후 도시에서 전국으로 조사범위가 확대되었다. 2002년까지 조사된 도시가계조사는 전국 72개 도시에 거주하는 근로자가구를 모그룹으로 하고 있으며, 단독가구 및 외국인 가구가 제외되었다. 특히 자영업자와 실업가구 또한 조사대상이지만 소득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2003년부터 시행된 가계동향조사는 전국으로 범위가 확대되어 통계의 대표성 문제가 많이 개선되었다. 2003년에는 대표도가 75.6%로 향상되고 단계적으로 농어촌경제조사와 가계조사와 접속하고, 2006년부터는 1인 가구의 특성 자료를 보완하여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가구 소비조사로 발전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이용할 자료 범위인 1990년부터 2012년까지는 1990년부터 2002년까지의 도시가계조사와 2003년부터 2012년까지의 가계동향조사로 이루어져 있다.<sup>4)</sup>

〈표 8〉은 가계동향조사를 구성하는 소득과 소비변수의 항목에 대한 설명이다. 총소득은 크게 경상소득과 비경상소득의 합으로 이루어진다. 경상소득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근로소득, 사업 및 부업소득, 재산소득, 그리고 이전소득으로 구성되어 있다. 근로소득은 가구주 근로소득과 나머지 가구원의 근로소득을 포함한 총 근로소득의 합이며 가처분소득은 소득에서 비소비지출을 뺀 나머지를 말한다. 소득이외의 소비변수는 내구재, 비내구재, 그리고 교육비 등을 포함한 소비지출과 음식비, 피복비, 교통·통신비를 포함한 비내구재 지출로 나누어진다. 본 연

4) 본 연구에서는 2006년부터 포함된 1인 가구를 포함한 도시가구만을 한정하여 전체가구의 표본으로 정하고자 한다.

구에서는 경상소득을 중심으로 소득재분배효과와 누진도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며, 세후소득 또한 경상소득에서 소득세를 차감한 것으로 정의한다.<sup>5)</sup>

<표 8> 소득 구성항목 - 가계동향조사

총 소 득	비경상소득	경조소득			
		퇴직금 및 연금일시금			
		기타비경상소득			
	경상소득	근로소득	가구주소득		
			배우자소득		
			기타가구원소득		
		사업 및 부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사적	사적이전	
	공적		공적연금 기타사회보장 수혜		

출처: 가계동향조사

<표 9>는 2012년 가계조사자료를 이용하여 기초통계량을 묘사한 것이다. 원시자료에 기반한 2012년 총가구수는 10,401 가구이며, 이 중 읍·면단위를 제외한 도시가구만을 고려하고 선택편의를 제외하면 총가구수의 수는 5,973 가구로 나타났다.<sup>6)</sup> 평균가구원수는 2.83명, 그중 취업인수는 1.32명으로 조사되었으며, 가구주의 평균연령은 50.6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당 연평균 명목 총소득은 44,108천 원이며 소비지출은 26,135천 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가구당 연평균 이전소득은 3,612천 원,

- 5) 소득세는 경상소득세와 사업소득세의 합으로 정의되며, 비경상소득세는 제외한다. 보고된 소득세액의 이용은 세부담의 누진도를 측정하는 데 한계를 갖는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본 연구의 목적인 세부담의 누진도의 시계열 흐름을 파악하는데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
- 6) 선택편의를 발생할 수 있는 소득세액이 영(0)이며 비과세대상이 아닌 소득 하위 20% 이상의 소득을 가진 가구는 표본에서 제외하였다.

비경상소득은 1,697천 원, 소득세액은 1,131천 원으로 나타났다.

한편 <표 10>은 전체가구를 가구주의 종사자 지위에 따라 근로자 가구와 자영업자가구로 구분하여 주요변수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근로자 가구수는 4,037 가구로 전체가구의 67.6%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영업자 가구수는 1,936 가구로 전체의 32.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종사자지위에 따른 분류에서 자영업자가구는 가계동향조사 표본에서 근로자가구의 표본과 더불어 중요한 하위 표본으로 인식된다. 또한 세액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아 근로자가구와의 비교·분석은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어 실증분석에서 이러한 가구구분에 따른 소득재분배효과와 누진도 효과를 비교·분석하기로 한다.<sup>7)</sup>

<표 9> 기초통계량 - 전체가구

	전체가구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가구원수	2.83	1.21	1	8
취업인수	1.32	0.86	0	5
가구주연령	50.56	14.05	16	94
총소득	44,108	31,709	31,709	0
경상소득	42,411	30,972	30,972	0
근로소득	33,954	30,103	0	252,000
소비지출	26,135	17,039	30,103	0
이전소득	3,612	7,010	17,039	540
비경상소득	1,697	5,872	7,010	0
소득세액	1,131	2,495	0	51,300
가구수	5,973			

주) 단위는 천 원임

7) 자영업자의 소득자료는 발표되지 않았으나, 최근 통계의 신분류개편과 함께 자료가 제공되고 있다. 하지만 무직가구도 포함되어 있어 자영업자 분류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비중은 낮아 자영업자 분류로 쓰기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10> 기초통계량 - 근로자가구 vs. 자영업자가구

	근로자가구				자영업자가구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가구원수	3.08	1.15	1	8	2.32	1.18	1	7
취업인수	1.55	0.66	1	5	0.83	1.01	0	5
가구주연령	45.82	11.15	19	84	60.43	14.35	16	94
총소득	52,153	30,002	504	285,600	27,333	28,445	0	216,000
경상소득	50,544	29,335	504	285,600	25,452	27,200	0	216,000
근로소득	45,694	28,219	0	252,000	9,471	15,766	0	129,600
소비지출	29,808	16,541	540	276,000	18,474	15,443	1,028	232,800
이전소득	2,686	6,398	0	99,446	5,543	7,795	0	79,275
비경상소득	1,608	5,601	0	152,400	1,881	6,399	0	129,600
소득세	1,564	2,900	0	51,300	230	686	0	8,522
가구수	4,037				1,936			

주) 단위는 천 원임

소득세제의 소득재분배 효과 분석 및 시사점

## 제Ⅳ장 실증분석





본 장에서는 앞서 이론적으로 논의한 세부담 누진도와 소득 재분배효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미시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을 실시한다. 먼저 총소득, 소득세, 세후소득에 대한 분위별 장기 시계열의 흐름을 살펴본 후 소득불평등도를 대표하는 지니계수의 추정을 통하여 1990년부터 2012년까지 소득불평등의 장기시계열의 추이를 살펴보기로 한다. 세전소득과 세후소득 지니계수와의 비교를 통해 소득재분배효과를 계산하고 세부담 누진도를 나타내는 Kakwani지수를 통하여 소득재분배효과와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같은 분석을 전체가구를 구성하고 있는 근로자가구와 자영업자가구에 따라 분할하여 비교·분석하기로 한다.

## 4.1. 전체 및 분위별 평균 소득 변화추이

### 4.1.1. 전 가구 대상 소득 변화추이

〈표 11〉은 경상소득 기준의 소득분위별로 1990년부터 2012년 도까지 묘사하고 있다. 1990년 전 가구에 대한 가구당 연평균 경상소득은 10,221천 원이며,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12년 42,411천 원에 이르고 있다. 그에 상응하는 소득세액은 1990년부터 집계 가능하여 1990년 가구당 연평균 178천 원을 부담한 이래 2008년까지 세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이후 2009년에 1,006천 원으로 감소하였다가 꾸준히 상승하여 2012년 현재 1,312천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분위별로 살펴보면 상위소득층으로 갈수록 세부담의 누진도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의 평균 소득세액의 감소는 감세효과로 전체적인 소득세 부담이 완화되었던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집계된 소득세 부담액으로 세후 (경상)소득을 계산한 것이 〈표 13〉에 나타나 있다. 세후소득은 경상소득과 비슷한 시계열 흐름을 보이고 있다. 1990년 평균 세후소득은 10,044천 원을 기록한 이래 외환위기인 1997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1998년의 세후소득 감소는 소득세의 시계열 추이와 거의 유사하여 이러한 이유는 외환위기의 거시충격이 실물경제에 상당한 부정적인 영향으로 가구 전체의 총소득의 감소에 기인한 것을 알 수 있다. 2008년 미국 발 세계금융위기로 인한 경제충격으로 2009년 다소 감소한 이래 꾸준히 증가하여 2012년 세후소득 평균은 41,280천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lt;표 11&gt; 소득분위별 경상소득 변화추이 - 전 가구

연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평균
1990	2,800	4,795	5,891	7,155	8,345	9,638	11,097	12,920	15,823	23,950	10,221
1991	3,649	5,917	7,289	8,839	10,312	11,818	13,580	15,756	19,015	28,950	12,491
1992	4,340	7,124	8,809	10,644	12,315	14,104	16,071	18,574	22,280	32,511	14,658
1993	4,127	7,367	9,252	11,406	13,380	15,403	17,643	20,424	24,355	35,653	15,855
1994	5,042	8,671	10,932	13,178	15,358	17,508	19,985	23,222	27,911	40,153	18,168
1995	4,687	8,216	10,314	12,930	16,178	19,208	22,448	26,443	32,175	46,199	19,845
1996	5,341	9,221	11,615	14,354	18,302	21,880	25,597	30,084	36,523	52,455	22,505
1997	5,341	9,380	12,084	15,123	19,529	23,138	27,360	32,208	38,659	54,150	23,651
1998	3,761	7,270	9,763	12,718	17,672	21,595	25,395	29,927	36,207	51,756	21,555
1999	3,964	7,547	9,886	12,981	18,359	22,716	26,924	31,698	38,286	56,071	22,808
2000	5,300	9,621	12,371	16,670	20,993	24,894	28,914	33,623	40,268	57,083	24,952
2001	5,863	10,442	13,367	17,794	22,710	27,298	31,898	37,537	44,838	63,618	27,507
2002	6,098	10,947	14,236	19,500	24,874	29,501	34,336	40,511	48,969	69,427	29,809
2003	5,622	11,182	14,963	21,186	26,586	31,325	36,050	42,122	50,138	71,461	31,018
2004	5,839	11,542	15,223	21,203	27,687	33,428	38,719	45,569	54,224	77,324	33,049
2005	5,540	11,371	15,292	22,104	29,391	35,148	40,648	47,521	57,118	83,230	34,703
2006	3,330	7,172	10,800	17,818	27,542	34,432	41,198	48,998	59,255	85,363	33,544
2007	3,570	7,686	11,576	19,177	29,365	36,595	43,846	51,808	62,791	91,990	35,805
2008	3,985	8,328	12,529	20,314	30,563	38,033	45,540	53,767	65,119	95,038	37,284
2009	3,627	8,257	12,709	21,747	30,700	37,844	44,981	53,119	64,368	95,108	37,203
2010	4,147	9,833	14,874	24,858	32,708	39,232	46,380	54,629	66,420	97,474	39,008
2011	3,980	9,493	15,092	25,270	33,691	40,928	48,294	57,189	69,654	104,421	40,757
2012	5,003	11,909	17,949	25,088	31,303	37,043	44,206	53,994	67,489	100,481	42,411

주) 단위는 천 원임.

&lt;표 12&gt; 소득분위별 소득세액 변화추이 - 전 가구

연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평균
1990	7	23	38	56	76	103	153	228	342	751	178
1991	11	21	37	63	104	100	157	210	345	765	181
1992	18	29	59	86	116	160	212	326	439	894	234
1993	47	27	74	121	159	202	269	370	508	1,010	278
1994	19	45	86	143	188	238	294	418	630	1,057	312
1995	3	18	27	154	235	376	531	794	1,146	2,124	541
1996	6	14	29	166	296	454	583	926	1,333	2,547	635
1997	2	10	37	147	290	385	600	853	1,276	2,271	587
1998	1	14	17	91	263	378	548	803	1,244	2,518	587
1999	1	5	15	114	269	377	538	840	1,140	2,503	581
2000	1	12	37	147	258	351	525	776	1,356	2,642	610
2001	1	10	28	158	268	445	672	987	1,656	3,028	725
2002	2	9	31	168	324	453	653	1,028	1,774	3,170	761
2003	3	7	38	184	298	477	660	1,059	1,658	3,032	741
2004	2	8	20	168	307	514	782	1,283	1,999	3,731	881
2005	2	8	13	177	354	551	882	1,367	2,058	4,575	998
2006	1	2	3	126	328	528	929	1,478	2,479	4,673	1,054
2007	1	0	5	157	374	665	1,046	1,524	2,536	5,145	1,145
2008	1	2	5	165	371	626	1,039	1,513	2,581	5,795	1,209
2009	0	2	113	156	302	552	752	1,318	2,073	4,797	1,006
2010	1	4	34	193	342	534	767	1,223	2,108	4,918	1,012
2011	1	3	36	222	386	570	841	1,319	2,153	5,620	1,115
2012	1	7	45	200	363	588	856	1,417	2,147	5,594	1,312

주) 단위는 천 원임.

&lt;표 13&gt; 소득분위별 세후소득 변화추이 - 전 가구

연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평균
1990	2,793	4,773	5,853	7,099	8,269	9,535	10,944	12,692	15,481	23,198	10,044
1991	3,638	5,896	7,251	8,776	10,208	11,718	13,423	15,547	18,670	28,185	12,310
1992	4,322	7,095	8,749	10,557	12,199	13,944	15,860	18,248	21,842	31,617	14,424
1993	4,080	7,340	9,178	11,285	13,222	15,201	17,374	20,054	23,846	34,644	15,577
1994	5,022	8,626	10,846	13,035	15,170	17,270	19,691	22,803	27,280	39,096	17,856
1995	4,684	8,198	10,287	12,776	15,943	18,831	21,917	25,649	31,029	44,076	19,305
1996	5,335	9,208	11,585	14,188	18,006	21,426	25,014	29,158	35,190	49,908	21,870
1997	5,339	9,370	12,048	14,976	19,239	22,752	26,760	31,354	37,383	51,878	23,064
1998	3,760	7,256	9,747	12,626	17,409	21,217	24,848	29,124	34,963	49,238	20,968
1999	3,963	7,542	9,871	12,867	18,090	22,339	26,385	30,858	37,146	53,568	22,227
2000	5,298	9,609	12,334	16,523	20,735	24,543	28,390	32,846	38,912	54,441	24,342
2001	5,861	10,432	13,339	17,636	22,441	26,853	31,225	36,550	43,181	60,590	26,782
2002	6,096	10,938	14,205	19,332	24,549	29,048	33,683	39,483	47,195	66,257	29,048
2003	5,620	11,175	14,925	21,002	26,287	30,848	35,390	41,063	48,480	68,429	30,277
2004	5,838	11,534	15,203	21,035	27,380	32,915	37,937	44,286	52,225	73,593	32,167
2005	5,539	11,363	15,279	21,926	29,037	34,597	39,766	46,155	55,061	78,655	33,704
2006	3,329	7,171	10,797	17,692	27,214	33,904	40,270	47,520	56,776	80,690	32,490
2007	3,569	7,685	11,572	19,020	28,990	35,930	42,800	50,284	60,255	86,845	34,660
2008	3,984	8,327	12,524	20,149	30,192	37,407	44,501	52,254	62,538	89,243	36,074
2009	3,626	8,254	12,596	21,591	30,398	37,292	44,229	51,800	62,295	90,311	36,197
2010	4,146	9,829	14,840	24,665	32,365	38,697	45,614	53,406	64,313	92,557	37,997
2011	3,979	9,490	15,056	25,049	33,305	40,358	47,453	55,870	67,501	98,801	39,642
2012	4,280	9,734	15,740	26,425	35,148	42,420	49,857	58,665	70,636	100,303	41,280

주) 단위는 천 원임.

#### 4.1.2. 근로자 vs. 자영업자 가구 대상 소득 변화추이

〈표 14〉는 근로자가구의 소득분위별 경상소득 변화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1990년 근로자 가구당 연평균 경상소득은 10,564천 원으로 나타났으며 이후 꾸준히 상승하여 2012년에는 50,544천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가구와 비교하여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세계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에 전년대비 경상소득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5〉의 소득세의 시계열 추이를 살펴보면 1990년 가구당 연평균 소득세는 223천 원으로 나뉘었으며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2년에는 1,691천 원의 세부담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8년까지 꾸준히 증가한 소득세 평균수준은 2009년에 근로소득세 감세정책으로 인해 소득세 부담이 줄어들었으나 2012년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계열 특징으로는 근로자가구의 4분위 이하 하위소득계층의 세부담이 2006년 이후 세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이를 2012년 현재까지 보이고 있다. 근로자가구에 대한 세후(경상)소득의 시계열 추이 또한 경상소득과 유사한 추이를 보이고 있다.

&lt;표 14&gt; 소득분위별 경상소득 변화추이 - 근로자가구

연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평균
1990	3,693	5,310	6,384	7,514	8,633	9,863	11,265	13,052	15,943	24,034	10,564
1991	4,600	6,515	7,922	9,332	10,661	12,067	13,772	15,894	19,148	29,101	12,887
1992	5,392	7,808	9,503	11,148	12,756	14,431	16,358	18,838	22,461	32,577	15,121
1993	5,684	8,518	10,504	12,372	14,068	15,922	18,050	20,674	24,508	35,868	16,612
1994	6,575	9,686	11,807	13,855	15,835	17,927	20,353	23,525	28,099	39,659	18,726
1995	7,090	10,215	12,976	15,690	18,325	20,923	23,994	27,696	33,290	46,904	21,702
1996	7,939	11,560	14,580	17,928	20,975	24,062	27,561	31,834	38,263	53,925	24,858
1997	8,287	12,150	15,454	19,162	22,091	25,325	29,360	33,636	39,860	54,861	26,006
1998	7,059	10,824	15,009	18,681	21,770	24,755	28,287	32,500	38,641	54,800	25,224
1999	7,066	10,776	15,411	19,463	22,935	26,234	29,899	34,434	40,883	58,900	26,591
2000	8,509	12,546	17,010	20,634	23,921	27,327	31,200	35,722	42,299	59,073	27,813
2001	9,405	13,844	18,391	22,611	26,631	30,467	34,966	40,504	47,215	66,697	31,059
2002	10,110	15,228	20,623	24,961	28,987	32,944	37,920	43,570	51,598	71,910	33,770
2003	9,709	15,611	21,904	26,298	30,276	34,230	39,039	45,026	52,862	74,831	34,963
2004	9,837	15,569	22,071	27,687	32,691	37,156	42,796	48,722	57,880	81,229	37,547
2005	9,947	16,272	24,137	30,026	34,848	39,463	44,779	51,340	61,404	87,533	39,962
2006	8,046	15,845	24,825	30,820	36,122	41,590	47,572	54,430	64,272	90,158	41,364
2007	8,781	16,905	26,384	32,655	38,538	44,324	50,450	58,078	69,137	98,431	44,358
2008	9,642	18,285	27,666	33,897	39,695	45,662	51,927	59,678	70,807	101,297	45,853
2009	9,111	17,808	26,980	33,012	38,873	44,547	51,019	58,291	69,704	100,577	44,978
2010	10,291	19,594	27,821	33,752	39,219	45,171	51,797	59,735	71,253	102,033	46,052
2011	10,290	19,830	28,467	34,854	40,811	46,866	53,843	62,232	75,081	109,566	48,165
2012	10,803	21,473	30,497	37,163	43,244	49,495	56,956	65,739	78,315	111,920	50,544

주) 단위는 천 원임.

&lt;표 15&gt; 소득분위별 소득세액 변화추이 - 근로자가구

연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평균
1990	22	23	55	70	91	134	183	276	431	942	223
1991	18	27	57	74	103	131	172	259	409	982	223
1992	17	35	77	106	147	185	262	405	566	1,132	293
1993	34	46	117	166	186	237	327	444	630	1,282	347
1994	30	63	127	176	217	287	373	521	800	1,380	397
1995	19	40	168	235	358	487	672	945	1,294	2,505	672
1996	19	45	195	289	458	542	811	1,157	1,579	2,895	799
1997	12	52	169	274	389	515	755	1,047	1,474	2,660	734
1998	6	42	175	289	414	539	768	1,138	1,436	2,992	780
1999	6	36	187	300	368	538	755	1,032	1,537	3,020	777
2000	7	53	155	259	356	512	753	1,102	1,743	3,259	819
2001	6	53	177	306	456	658	983	1,502	2,106	3,699	994
2002	9	81	215	371	517	698	953	1,486	2,293	3,936	1,055
2003	8	63	229	320	508	641	1,036	1,555	2,098	3,655	1,011
2004	8	41	201	338	528	850	1,196	1,784	2,586	4,402	1,193
2005	8	58	240	407	590	925	1,299	1,901	2,771	5,447	1,364
2006	3	79	261	472	663	1,055	1,469	2,229	3,166	5,608	1,501
2007	1	112	296	508	805	1,211	1,553	2,273	3,334	6,164	1,625
2008	4	110	327	524	708	1,159	1,589	2,234	3,236	7,033	1,692
2009	4	97	249	379	628	828	1,244	1,850	2,691	5,823	1,379
2010	8	119	253	380	597	793	1,140	1,788	2,742	5,863	1,368
2011	7	128	281	444	639	847	1,255	1,856	2,866	6,964	1,528
2012	17	135	264	439	657	891	1,426	1,832	2,975	6,895	1,691

주) 단위는 천 원임.

&lt;표 16&gt; 소득분위별 세후소득 변화추이 - 근로자가구

연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평균
1990	3,671	5,288	6,329	7,444	8,541	9,730	11,082	12,776	15,512	23,092	10,342
1991	4,582	6,488	7,865	9,258	10,559	11,936	13,600	15,635	18,739	28,119	12,664
1992	5,374	7,773	9,426	11,042	12,609	14,245	16,097	18,433	21,895	31,445	14,827
1993	5,650	8,473	10,387	12,206	13,882	15,685	17,722	20,230	23,878	34,585	16,265
1994	6,545	9,623	11,680	13,679	15,618	17,640	19,980	23,004	27,299	38,279	18,328
1995	7,071	10,175	12,808	15,455	17,967	20,437	23,322	26,751	31,996	44,400	21,030
1996	7,919	11,515	14,385	17,638	20,517	23,520	26,750	30,677	36,684	51,030	24,059
1997	8,274	12,099	15,284	18,888	21,703	24,810	28,605	32,589	38,386	52,201	25,272
1998	7,053	10,782	14,834	18,391	21,356	24,216	27,519	31,361	37,205	51,807	24,445
1999	7,061	10,739	15,225	19,164	22,567	25,696	29,145	33,401	39,346	55,880	25,814
2000	8,502	12,493	16,855	20,374	23,566	26,815	30,447	34,621	40,556	55,814	26,994
2001	9,399	13,791	18,214	22,305	26,175	29,809	33,983	39,002	45,109	62,998	30,065
2002	10,100	15,147	20,408	24,590	28,470	32,246	36,967	42,083	49,306	67,973	32,715
2003	9,701	15,548	21,675	25,978	29,768	33,589	38,002	43,471	50,764	71,176	33,953
2004	9,829	15,527	21,869	27,349	32,163	36,306	41,599	46,938	55,294	76,826	36,354
2005	9,939	16,213	23,896	29,619	34,258	38,537	43,480	49,439	58,633	82,086	38,598
2006	8,043	15,765	24,564	30,348	35,458	40,535	46,103	52,201	61,106	84,549	39,863
2007	8,779	16,792	26,088	32,147	37,732	43,113	48,897	55,804	65,803	92,266	42,733
2008	9,638	18,175	27,339	33,373	38,987	44,503	50,337	57,445	67,572	94,264	44,161
2009	9,106	17,711	26,731	32,633	38,245	43,719	49,775	56,441	67,012	94,754	43,600
2010	10,284	19,475	27,568	33,372	38,621	44,378	50,657	57,947	68,511	96,170	44,684
2011	10,283	19,702	28,186	34,410	40,172	46,019	52,589	60,376	72,216	102,603	46,638
2012	10,791	21,327	30,217	36,708	42,551	48,574	55,530	63,869	75,328	105,061	48,981

주) 단위는 천 원임.

한편 자영업자가구에 대한 소득분위별 변화추이는 <표 17>~<표 19>에 묘사되어 있다. 종사자지위에 따른 분류에서 자영업자가구는 가계동향조사 표본에서 전 가구의 거의 32% 수준을 차지하고 있어 근로자가구의 표본과 중요한 하위 표본으로 인식된다. 또한 세액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아 근로자가구와의 비교·분석은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1990년 자영업자가구의 연평균 총소득은 9,373천 원으로 나타난 이래 꾸준히 증가하여 2012년 연평균 소득이 25,452천 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소득세의 소득분위별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자영업자의 연평균 소득세 부담은 근로자가구의 소득분위별 소득세 부담과 유사한 추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평균소득세를 살펴보면 2012년 평균소득세는 311천 원으로 나타나 근로자가구의 평균 부담 소득세의 18.4% 수준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특히 2000년대 이후의 과표양성화가 상당히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영업가구의 세부담은 여전히 낮은 수준을 보여 소득공제수준의 현실화가 요구되는 반증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자영업자의 연평균 세후소득은 총소득과 유사한 시계열 추이를 보이고 있다. 소득세의 부담이 상위소득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세후소득수준의 소득분위에 따른 격차는 상위소득으로 갈수록 다소 감소하고 있는 추이를 보인다.

&lt;표 17&gt; 소득분위별 경상소득 변화추이 - 자영업자가구

연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평균
1990	1,649	3,237	4,658	5,833	7,445	8,924	10,608	12,548	15,523	23,731	9,373
1991	2,305	4,490	6,018	7,306	9,213	11,075	13,049	15,420	18,706	28,632	11,582
1992	2,737	5,545	7,366	9,035	11,150	13,183	15,341	17,922	21,883	32,349	13,611
1993	2,209	4,726	6,820	8,404	10,613	13,553	16,458	19,628	23,968	35,138	14,085
1994	3,155	6,311	8,924	11,271	14,030	16,510	19,165	22,489	27,473	41,188	17,001
1995	2,134	4,068	5,793	7,317	8,719	9,903	11,174	17,187	25,546	42,741	13,381
1996	2,572	4,883	6,745	8,391	9,969	11,326	12,433	18,800	27,616	44,787	14,676
1997	2,585	4,782	6,692	8,323	10,119	11,718	13,088	21,935	32,079	50,986	16,138
1998	1,408	3,497	5,168	6,507	7,859	9,216	10,437	14,571	24,941	39,912	12,280
1999	1,620	4,208	5,990	7,473	8,878	10,038	11,887	19,953	29,272	46,661	14,552
2000	2,882	5,841	8,069	10,252	12,050	15,031	21,746	27,671	34,463	51,422	18,904
2001	3,316	6,495	8,842	10,873	12,805	15,642	22,768	29,231	37,206	55,161	20,173
2002	3,363	6,766	9,079	11,328	13,396	16,115	24,360	31,268	40,380	62,571	21,809
2003	2,642	6,045	8,934	11,502	13,802	17,249	25,943	33,891	41,870	61,102	22,242
2004	2,732	6,599	9,197	11,846	14,184	16,922	24,888	33,859	42,918	63,719	22,638
2005	2,371	6,028	8,850	11,417	13,822	15,960	23,662	33,597	43,767	67,213	22,617
2006	1,241	3,452	5,190	6,612	8,338	10,370	12,271	24,723	39,176	67,657	17,844
2007	1,333	3,877	5,425	7,193	9,066	11,241	13,780	28,690	42,367	68,474	19,093
2008	1,508	4,199	5,794	7,310	9,148	11,378	13,460	22,909	42,234	70,944	18,837
2009	1,220	3,684	5,638	7,359	9,370	11,800	15,581	30,151	44,865	75,053	20,425
2010	1,489	4,270	6,432	8,778	11,332	13,802	22,863	37,224	49,606	80,887	23,613
2011	1,579	4,051	6,024	8,394	11,119	14,033	24,640	39,550	53,497	86,766	24,889
2012	1,925	4,449	6,565	8,724	11,452	14,683	24,993	40,874	55,218	86,324	25,452

주) 단위는 천 원임.

<표 18> 소득분위별 소득세액 변화추이 - 자영업자가구

연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평균
1990	6	7	9	18	39	48	50	101	126	259	66
1991	6	6	17	29	72	71	87	121	190	251	86
1992	24	21	29	48	85	72	113	141	155	309	100
1993	10	82	17	35	89	97	129	168	194	347	117
1994	11	17	42	73	109	129	166	163	250	372	134
1995	0	2	1	4	7	6	11	124	205	488	85
1996	0	1	1	2	5	4	5	126	233	544	92
1997	1	2	3	2	1	4	16	220	237	682	116
1998	0	1	2	2	40	13	6	117	291	540	101
1999	0	1	8	1	7	5	106	304	492	568	152
2000	1	1	4	20	34	87	194	229	321	795	168
2001	2	1	8	12	5	86	173	316	351	746	170
2002	0	1	5	7	13	34	141	191	355	920	167
2003	3	3	2	5	10	59	115	223	318	684	142
2004	1	2	1	8	6	43	146	222	359	813	160
2005	0	2	4	4	4	10	129	245	342	838	158
2006	0	1	1	1	2	2	5	211	346	1,015	158
2007	0	2	1	0	1	3	29	300	525	1,218	208
2008	0	1	1	2	0	2	3	171	374	1,145	170
2009	0	1	1	2	1	337	56	186	332	1,112	203
2010	0	0	2	1	6	11	149	252	499	1,418	233
2011	0	1	1	3	6	6	173	310	481	1,326	230
2012	0	1	4	3	4	22	148	291	454	1,343	311

주) 단위는 천 원임.

&lt;표 19&gt; 소득분위별 세후소득 변화추이 - 자영업자가구

연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평균
1990	1,643	3,230	4,650	5,815	7,406	8,876	10,558	12,447	15,397	23,471	9,307
1991	2,299	4,484	6,001	7,277	9,141	11,005	12,962	15,299	18,516	28,381	11,496
1992	2,713	5,524	7,337	8,987	11,065	13,111	15,228	17,781	21,729	32,040	13,511
1993	2,198	4,644	6,802	8,370	10,525	13,456	16,330	19,460	23,774	34,791	13,967
1994	3,145	6,294	8,883	11,198	13,921	16,380	18,999	22,326	27,223	40,815	16,867
1995	2,134	4,066	5,792	7,314	8,712	9,897	11,163	17,063	25,341	42,254	13,297
1996	2,572	4,883	6,744	8,389	9,964	11,322	12,429	18,674	27,383	44,243	14,584
1997	2,584	4,780	6,689	8,322	10,118	11,714	13,072	21,715	31,842	50,304	16,021
1998	1,407	3,497	5,167	6,505	7,818	9,204	10,432	14,454	24,651	39,371	12,179
1999	1,620	4,207	5,982	7,471	8,871	10,033	11,781	19,649	28,780	46,094	14,401
2000	2,881	5,840	8,065	10,232	12,016	14,943	21,552	27,441	34,142	50,627	18,736
2001	3,315	6,494	8,834	10,860	12,801	15,556	22,595	28,914	36,855	54,414	20,003
2002	3,363	6,764	9,074	11,321	13,383	16,081	24,219	31,077	40,026	61,651	21,643
2003	2,639	6,042	8,932	11,497	13,793	17,190	25,828	33,668	41,552	60,419	22,100
2004	2,732	6,598	9,196	11,839	14,178	16,879	24,742	33,637	42,559	62,906	22,478
2005	2,371	6,026	8,846	11,413	13,818	15,950	23,533	33,351	43,425	66,375	22,459
2006	1,241	3,451	5,189	6,610	8,336	10,368	12,266	24,512	38,830	66,642	17,685
2007	1,333	3,874	5,423	7,193	9,065	11,237	13,750	28,390	41,843	67,257	18,886
2008	1,508	4,198	5,793	7,308	9,148	11,376	13,457	22,738	41,860	69,798	18,667
2009	1,220	3,683	5,637	7,358	9,369	11,462	15,525	29,964	44,533	73,941	20,223
2010	1,489	4,269	6,430	8,777	11,326	13,791	22,714	36,972	49,107	79,469	23,379
2011	1,579	4,049	6,023	8,391	11,113	14,026	24,467	39,240	53,015	85,440	24,658
2012	1,925	4,449	6,563	8,722	11,449	14,665	24,840	40,571	54,768	84,956	25,222

주) 단위는 천 원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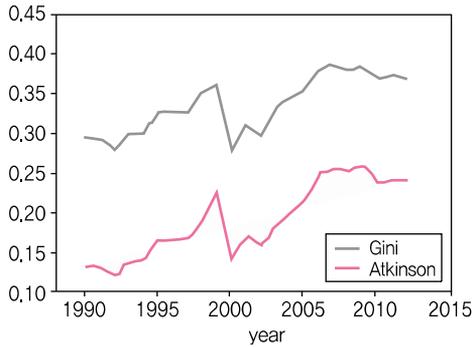
## 4.2. 소득재분배 추이

소득의 불평등도를 대표하는 지니계수, Atkinson를 통하여 소득불평등도의 시계열 흐름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그림 8>은 1990년부터 현재 2012년까지 경상소득 기준으로 한 지니계수, Atkinson의 시계열 추이를 묘사한 것이다. 1990년 지니계수는 0.2933을 기록한 이래 다소 증감하는 추이를 1990년 후반까지 보이다가 외환위기 이후 급격히 상승하였다. 2000년에 대폭 완화된 모습을 보이던 소득불평등도는 이후 서서히 상승하다가 2008년 세계금융위기 여파로 2007년 0.3871의 최고점을 기록한 이래 최근 들어 다소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림 8>에서는 Atkinson지수를 함께 묘사하고 있는데 지수의 수준값의 차이가 있으나 유사한 시계열 추이를 보이고 있어 소득불평등도의 전체적인 시계열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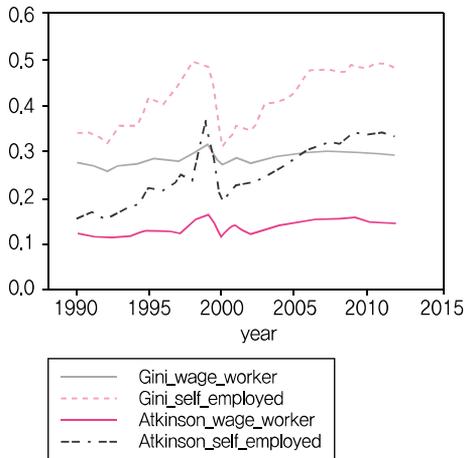
한편 근로자가구와 자영업가구로 분할하여 비교한 것은 <그림 9>에 묘사되어 있다. 두 그룹에 대한 각각의 불평등지수인 지니계수와 Atkinson지수의 시계열 추이는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두 그룹간의 비교해보면 지니계수로 살펴본 소득불평등도는 근로자가구인 경우 1990년부터 1997년까지 거의 변화가 없었으나, 자영업가구의 소득불평등도는 1990년 0.338의 값을 기록한 이래 꾸준히 상승하여 1998년 0.4914까지 상승하였다. 이후 증감을 반복하는 모습을 보이며 2012년 0.4825를 기록하였다. 전체표본의 처음표본과 마지막 기간을 대상으로 소

득불평등도의 증감율을 살펴보면 근로자가구의 경우 1990년 대비 2012년 5.6% 증가한 반면, 자영업자가구는 42.7% 증가한 것을 나타나 자영업자의 소득불평등도는 많이 악화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8> 소득재분배 시계열 추이



<그림 9> 소득재분배 시계열 추이 - 근로자, 자영업자 비교



### 4.3. 누진도와 소득재분배 효과 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

#### 4.3.1. 전 가구 대상 결과

본 절에서는 1990년부터 세부담의 누진도를 나타내는 Kakwani 지수 추정을 통하여 소득세액의 누진도를 파악하고 누진도의 시계열 변화를 살펴본다. 소득재분배효과에 대한 평가는 앞서 추정한 총소득의 지니계수와 세후소득의 지니계수의 변화를 비교함으로써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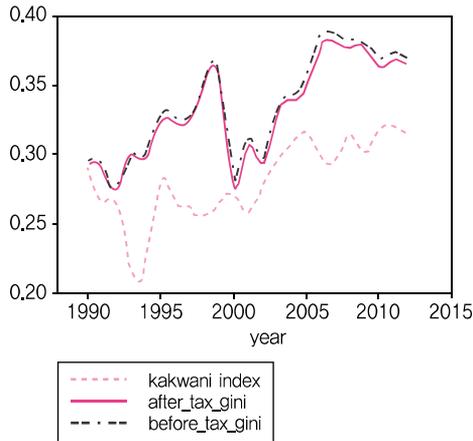
〈그림 10〉과 〈표 20〉은 1990년부터 2012년까지 소득세의 누진도, 누진도변화, 소득재분배효과, 그리고 소득재분배효과의 증감을 묘사한 것이다. 먼저 소득세의 누진도의 시계열의 흐름은 1990년 0.2906을 기록한 이래 증감을 반복하다가 2011년 0.3205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가장 최근인 2012년에는 0.3146을 기록하였다.<sup>8)</sup>

지니계수의 변화율로 살펴본 소득재분배효과의 시계열 추이를 살펴보면 먼저 1990년대의 특징은 1990년 0.92%에서 1.40%까지 증가하였다가 외환위기인 1997년과 1998년에 각각 다소 증가폭이 감소한 1.16%, 1.27%의 소득재분배효과를 나타냈다. 2000년 이후에는 꾸준히 상승하여 2008년에는 1.54%로 증가하였다. 이 기간 중 카드대란의 2003년, 2009년, 2012년이 전년에

8) 세부담의 누진도는 Kakwani지수가 0보다 크고 1에 가까울수록 누진도가 더 크다.

비해 증가폭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세계금융위기직 후인 2009년의 소득재분배효과는 1.23%로 증가폭이 최근 들어 가장 작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0> 소득세제의 누진도와 소득재분배 효과 변화추이 - 전 가구



<표 20> 세부담 누진도 변화와 소득재분배효과 - 전 가구

연도	kakwani	Gini		재분배 효과	재분배효과 증감	누진도 변화
	누진도	세후소득	총소득			
1990	0.2906	0.2906	0.2933	-0.9206	-	-
1991	0.2648	0.2916	0.2936	-0.6812	-0.2394	0.0258
1992	0.2637	0.2746	0.2770	-0.8664	0.1852	0.0011
1993	0.2170	0.2984	0.3005	-0.6988	-0.1676	0.0467
1994	0.2180	0.2967	0.2988	-0.7028	0.0040	-0.0010
1995	0.2808	0.3242	0.3288	-1.3990	0.6962	-0.0628
1996	0.2660	0.3234	0.3278	-1.3423	-0.0567	0.0148
1997	0.2615	0.3243	0.3281	-1.1582	-0.1841	0.0045
1998	0.2532	0.3501	0.3546	-1.2690	0.1109	0.0083
1999	0.2653	0.3567	0.3613	-1.2732	0.0041	-0.0121
2000	0.2706	0.2765	0.2802	-1.3205	0.0473	-0.0053
2001	0.2578	0.3067	0.3113	-1.4777	0.1572	0.0128
2002	0.2764	0.2917	0.2966	-1.6521	0.1744	-0.0186
2003	0.2953	0.3289	0.3327	-1.1422	-0.5099	-0.0189
2004	0.3075	0.3382	0.3426	-1.2843	0.1421	-0.0122

연도	kakwani	Gini		재분배 효과	재분배효과 증감	누진도 변화
	누진도	세후소득	총소득			
2005	0.3155	0.3477	0.3527	-1.4176	0.1333	-0.0080
2006	0.2981	0.3801	0.3853	-1.3496	-0.0680	0.0174
2007	0.2936	0.3817	0.3871	-1.3950	0.0454	0.0045
2008	0.3145	0.3769	0.3828	-1.5413	0.1463	-0.0209
2009	0.3000	0.3779	0.3826	-1.2284	-0.3128	0.0145
2010	0.3180	0.3636	0.3683	-1.2761	0.0477	-0.0180
2011	0.3205	0.3690	0.3741	-1.3633	0.0871	-0.0025
2012	0.3146	0.3650	0.3699	-1.3247	-0.0386	0.0059

주1) 세후소득 = 경상소득 - 소득세액(=소득세+사업소득세)로 정의함.

2) 재분배효과 = (세후(경상)소득지니 - 세전(경상)소득지니)/(세전(경상)소득지니)로 정의하며, 모든 값이 음(-)을 값을 나타낸 이유는 세후소득으로 상대격차가 감소하였기 때문임.

3) Kakwan이지수는 세부담의 누진도를 측정하는 지수로 0이면 세부담이 비례적임을 의미하고 0보다 작으면 역진적, 0보다 크면 누진적임을 나타냄.

계산된 장기 시계열 자료를 바탕으로 세부담의 누진도와 소득재분배효과의 관계를 살펴보기로 하자. <그림 11>에서 X축(가로축)은 소득세 누진도를 Y축(세로축)은 소득재분배효과를 나타낸다. 다소 비대칭이긴 하지만 세부담의 누진도와 소득재분배효과의 일반적 상관관계라 할 수 있는 U자 형태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앞서 설명한 이론적 모형에서 설명한 역U자 형태로 연결하여 다시 설명하면 X축의 소득세 누진도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누진적이라 할 수 있으며, Y축의 소득재분배효과의 음(-)의 값은 재분배효과가 완화되는 것을 나타냄으로 양(+)의 값으로 표현하면 X축을 기준으로 변환하는 역U자 형태를 의미한다.

즉 세부담의 누진도가 증가할수록 소득재분배효과는 증가하나, 소득재분배효과가 영(0)인 점을 벗어나는 시점을 지나서는 누진도가 증가할수록 소득재분배효과는 감소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sup>9)</sup> 이와 같이 누진도와 소득재분배효과의 상관관계

를 1990년부터 2012년까지 우리나라의 장기시계열 자료를 이용한 실증적 결과를 확인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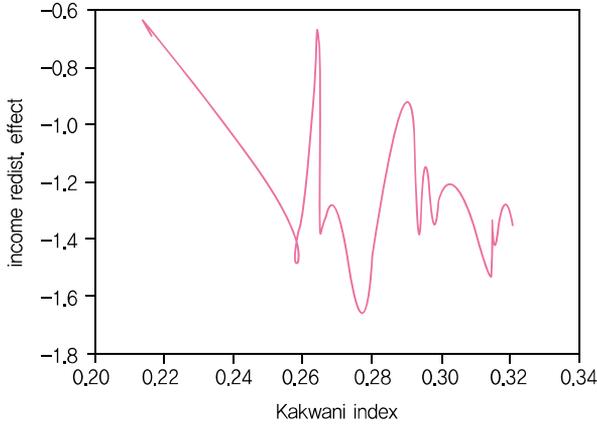
지난 4개의 각 행정부별로 살펴본 세부담의 누진도와 소득재분배 효과사이의 방향으로 살펴본 성명재(2011)의 연구에 따르면, YS 정부를 제외하고 역(-)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즉 세부담의 누진도의 변화와 소득재분배효과의 변화와의 관계를 살펴본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각 정부의 평균적인 변화의 비교가 아닌 1990년부터 각 연도별 자료를 바탕으로 장기적인 세부담의 누진도변화와 소득재분배효과의 변화와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자 한다.

〈그림 12〉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세부담의 누진도의 변화와 소득재분배효과의 변화와의 관계는 음(-)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세부담의 누진도의 변화율이 작음에도 불구하고 세부담의 누진도의 양(+)의 변화율은 소득재분배효과의 음(-)의 변화율의 나타내는 관계를 의미한다.<sup>10)</sup> 이는 세부담 누진도에 대한 소득재분배효과의 역 U자 형태의 관계를 설명하는 또 다른 실증적 증거를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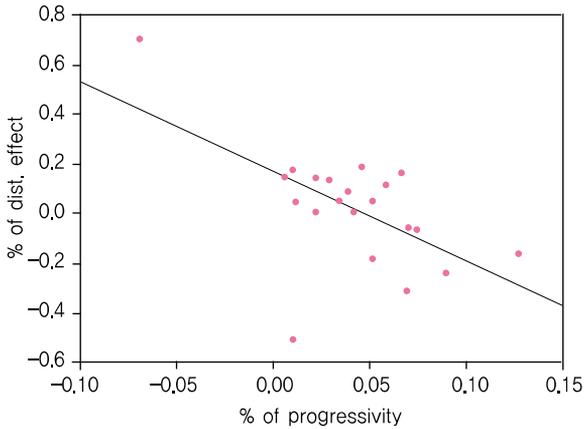
9) 누진도와 재분배효과와의 상관계수는 -0.573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으로 추정되어 음(-)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였다.

10) 기존 연구와 비교하여 소득재분배효과의 크기는 상대적으로 과소 보고될 수 있는 세액변수에 의해 도출된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장기 시계열에 기반한 세부담 누진도와 소득재분배효과와의 관계를 도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설명은 논외로 한다.

<그림 11> 세부담 누진도와 소득재분배효과와의 관계 - 전 가구



<그림 12> 세부담누진도의 변화율과 소득재분배 효과변화율과의 관계 - 전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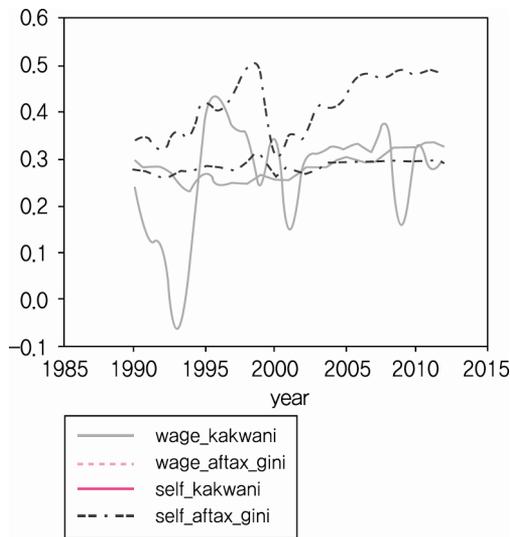
#### 4.3.2. 근로자 vs. 자영업자 가구 대상 결과

소득세부담 누진도와 소득재분배효과를 근로자가구와 자영업자가구로 분할하여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표 21>는 근로자

가구에 대해 세부담 누진도를 나타내는 Kakwani지수, 소득재분배효과를 나타내는 세후·세전 지니계수를 중심으로 재분배효과와 누진도 변화를 묘사하고 있다. Kakwani지수는 1990년 0.2971을 기록한 이래 증감을 반복하나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2011년 0.3362로 가장 누진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현재 다소 완화된 0.3243을 기록하였다.

근로자가구에 대한 세전경상소득과 세후경상소득의 지니계수의 차이인 소득재분배효과는 1990년 1.18%를 기록한 이래로 꾸준히 상승하여 2012년 2.01%의 소득재분배효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1990년대에는 1995년에 1.70%의 고점을 기록한 이래 2000년 1.57%로 하락하였다가 2002년 고점 이후 꾸준히 상승하여 2008년에는 2.27%로 소득재분배효과가 최근 들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3> 세부담의 누진도와 소득재분배 변화추이 - 근로자 vs. 자영업자



&lt;표 21&gt; 세부담 누진도 변화와 소득재분배효과 - 근로자가구

연도	kakwani	Gini		재분배효과	재분배효과 증감	누진도변화
	누진도	세후소득	총소득			
1990	0.2971	0.2753	0.2786	-1.1845		
1991	0.2826	0.2724	0.2750	-0.9455	-0.2390	0.0145
1992	0.2796	0.2586	0.2617	-1.1846	0.2391	0.0030
1993	0.2503	0.2710	0.2739	-1.0588	-0.1258	0.0293
1994	0.2312	0.2707	0.2735	-1.0238	-0.0350	0.0191
1995	0.2683	0.2829	0.2878	-1.7026	0.6788	-0.0371
1996	0.2415	0.2807	0.2853	-1.6123	-0.0902	0.0268
1997	0.2510	0.2724	0.2765	-1.4828	-0.1295	-0.0095
1998	0.2466	0.2925	0.2974	-1.6476	0.1648	0.0044
1999	0.2641	0.3121	0.3172	-1.6078	-0.0398	-0.0175
2000	0.2516	0.2629	0.2671	-1.5724	-0.0354	0.0125
2001	0.2515	0.2820	0.2876	-1.9471	0.3747	0.0001
2002	0.2804	0.2664	0.2726	-2.2744	0.3272	-0.0289
2003	0.2788	0.2812	0.2855	-1.5061	-0.7683	0.0016
2004	0.2905	0.2920	0.2970	-1.6835	0.1774	-0.0117
2005	0.3031	0.2938	0.2995	-1.9032	0.2197	-0.0126
2006	0.2934	0.2933	0.2994	-2.0374	0.1342	0.0097
2007	0.2910	0.2970	0.3032	-2.0449	0.0074	0.0024
2008	0.3141	0.2929	0.2997	-2.2689	0.2241	-0.0231
2009	0.3256	0.2980	0.3039	-1.9414	-0.3275	-0.0115
2010	0.3243	0.2909	0.2965	-1.8887	-0.0527	0.0013
2011	0.3362	0.2936	0.2999	-2.1007	0.2120	-0.0119
2012	0.3243	0.2883	0.2942	-2.0054	-0.0953	0.0119

주1) 세후소득 = 경상소득 - 소득세액(=소득세+사업소득세)로 정의함.

2) 재분배효과 = (세후(경상)소득지니 - 세전(경상)소득지니)/(세전(경상)소득지니)로 정의하며, 모든 값이 음(-)을 값을 나타낸 이유는 세후소득으로 상대격차가 감소하였기 때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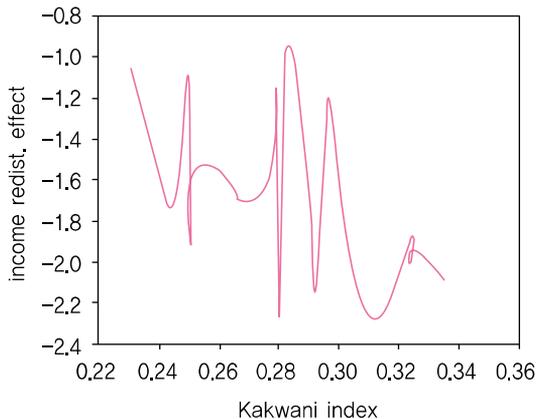
3) kakwani지수는 세부담의 누진도를 측정하는 지수로 0이면 세부담이 비례적임을 의미하고 0보다 작으면 역진적, 0보다 크면 누진적임을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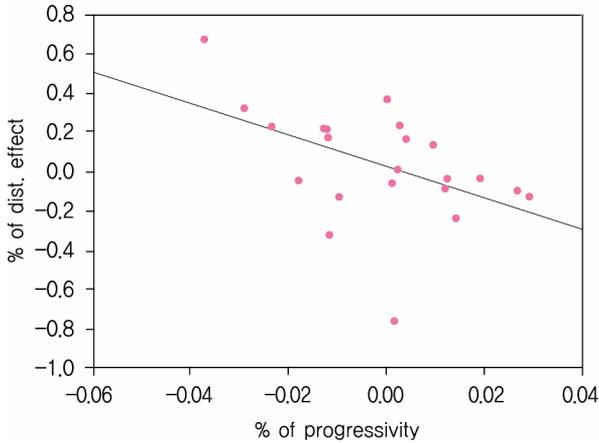
전가구와 동일하게 근로자가구에 대한 세부담 누진도와 소득재분배효과와의 관계를 묘사하고 있는 것이 <그림 14>이다. 전체가구와 마찬가지로 세부담누진도와 소득재분배효과 간의 U자 형태가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소득재분배효과의 값들 양(+의 값으로 전환하여 바꾸면 역U자 형태로 바뀌게 됨을 전

가구의 경우와 동일하게 설명할 수 있다. 전가구와 비교해서 누진도가 낮은 부분에서 소득재분배효과가 더욱 큰 반면, 누진도가 큰 부분에서는 상대적으로 소득재분배효과가 작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15>는 근로자가구에 대해 세부담 누진도 변화율과 소득재분배 변화율과의 상관관계를 묘사하고 있다. 각 연도별로 계산된 누진도의 변화율이 증가함에 따라 소득재분배효과의 변화율은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근로자가구만을 고려했을 경우 전체가구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약한 음(-)의 관계를 보이고 있다.

<그림 14> 세부담 누진도와 소득재분배효과와의 관계 - 근로자가구



**<그림 15> 누진도 변화율과 재분배효과 변화율과의 관계 - 근로자가구**

〈표 22〉는 자영업자가구만을 대상으로 한 세부담 누진도와 소득재분배효과를 조사하고 있다. 세부담 누진도를 나타내는 Kakwani지수는 1990년 0.2415를 기록한 이래 등락을 반복하다가 2012년에는 0.2976으로 나타났다. 추이를 좀 더 살펴보면 특히 외환위기 직전인 1996년이 세부담의 누진도가 가장 큰 연도였으며 그 후 다소 증가하다가 최근 들어서는 2008년에 0.3648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의 소득재분배효과는 1990년 0.296%로 나타난 이래 시계열의 흐름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었으나 2000년 0.746%로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자영업자가구의 세부담 누진도와 소득재분배효과와의 관계를 조사하고 있는 것이 〈그림 16〉이다. 세부담 누진도가 높은 부분에서는 소득재분배효과가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체가구, 근로자가구를 대상으로 한 U자 형태 혹은 역U자 형태와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 또한

세부담누진도의 변화율과 소득재분배효과의 변화율과의 상관관계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자영업자가구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도 세부담의 변화가 증가하면 소득재분배변화도 감소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22> 세부담 누진도 변화와 소득재분배효과 - 자영업자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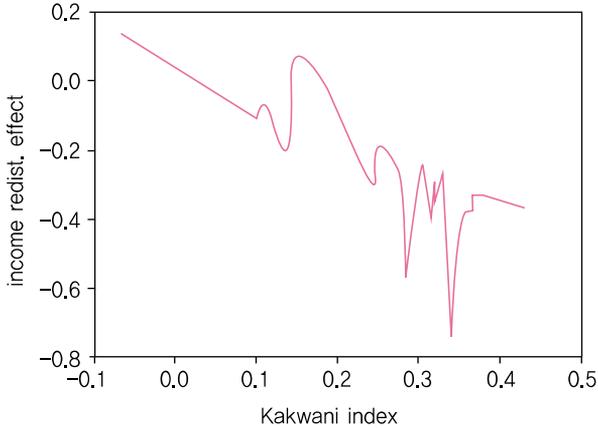
연도	kakwani	Gini		재분배 효과	재분배효과 증감	누진도 변화
	누진도	세후소득	총소득			
1990	0.2415	0.3371	0.3381	-0.2958		
1991	0.1184	0.3434	0.3437	-0.0873	-0.2085	0.1231
1992	0.1028	0.3143	0.3146	-0.0954	0.0081	0.0156
1993	-0.0657	0.3583	0.3578	0.1397	-0.2351	0.1685
1994	0.0823	0.3496	0.3499	-0.0857	0.2255	-0.1480
1995	0.3783	0.4181	0.4195	-0.3337	0.2480	-0.2960
1996	0.4308	0.4025	0.4040	-0.3713	0.0376	-0.0525
1997	0.3653	0.4431	0.4446	-0.3374	-0.0339	0.0655
1998	0.3490	0.4892	0.4914	-0.4477	0.1103	0.0163
1999	0.2435	0.4828	0.4838	-0.2067	-0.2410	0.1055
2000	0.3418	0.3059	0.3082	-0.7463	0.5396	-0.0983
2001	0.1395	0.3518	0.3525	-0.1986	-0.5477	0.2023
2002	0.2807	0.3405	0.3425	-0.5839	0.3854	-0.1412
2003	0.3078	0.4062	0.4073	-0.2701	-0.3139	-0.0271
2004	0.3252	0.4090	0.4103	-0.3168	0.0468	-0.0174
2005	0.3190	0.4277	0.4289	-0.2798	-0.0371	0.0062
2006	0.3323	0.4776	0.4791	-0.3131	0.0333	-0.0133
2007	0.3161	0.4767	0.4786	-0.3970	0.0839	0.0162
2008	0.3648	0.4739	0.4757	-0.3784	-0.0186	-0.0487
2009	0.1546	0.4902	0.4898	0.0817	-0.4601	0.2102
2010	0.3193	0.4791	0.4808	-0.3536	0.4352	-0.1647
2011	0.2794	0.4921	0.4935	-0.2837	-0.0699	0.0399
2012	0.2976	0.4810	0.4825	-0.3109	0.0272	-0.0182

주1) 세후소득 = 경상소득 - 소득세액(=소득세+사업소득세)로 정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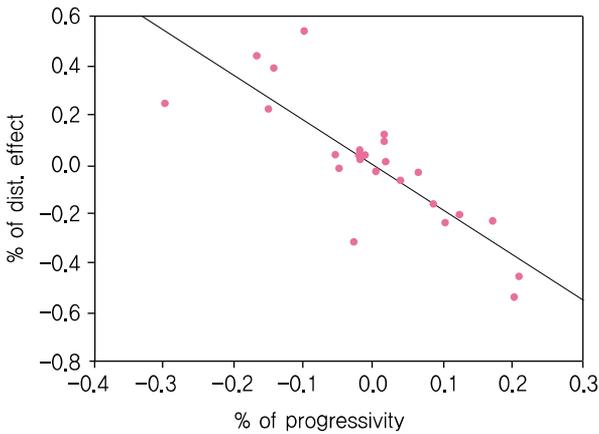
2) 재분배효과 = (세후(경상)소득지니 - 세전(경상)소득지니)/(세전(경상)소득지니)로 정의하며, 모든 값이 음(-)을 값을 나타낸 이유는 세후소득으로 상대격차가 감소하였기 때문임.

3) kakwani지수는 세부담의 누진도를 측정하는 지수로 0이면 세부담이 비례적임을 의미하고 0보다 작으면 역진적, 0보다 크면 누진적임을 나타냄.

<그림 16> 세부담 누진도와 소득재분배효과와의 관계 - 자영업자가구



<그림 17> 누진도 변화율과 재분배효과 변화율과의 관계 - 자영업자가구



근로자가구와 자영업자가구의 두 그룹을 함께 비교하고 있는 것이 <그림 18>이다. <그림 18>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근로자가구와 자영업자가구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데

근로자가구를 대상으로 한 누진도와 소득재분배효과 사이의 U자 형태의 관계를 뚜렷이 보이고 있는 반면, 동일한 차원에서 비교하면 자영업자가구의 상관관계는 약한 U형태로 나타남을 볼 수 있다. 나아가 세부담 누진도의 변화율과 소득재분배효과의 변화율과의 상관관계는 근로자가구의 강한 음(-)의 상관관계와 자영업자가구의 약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이는 전 가구를 고려했을 경우 근로자가구 그룹이 상대적으로 음(-)의 상관관계의 전체 결과를 도출하고 있음을 이러한 비교에서 알 수 있다.

<그림 18> 세부담 누진도와 소득재분배효과와의 관계 - 두 그룹 비교





소득세제의 소득재분배 효과 분석 및 시사점

제 V 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 5.1. 소득세제의 누진도와 소득재분배 효과 간 역U자형 상관계

본 연구는 전 가구 대상, 나아가 전 가구를 근로자 vs. 자영업자 가구로 분할하여 소득세제의 누진도와 소득재분배 효과에 대해 분석하였다. 전 가구 대상 분석에서는 소득세제의 누진도와 소득재분배 효과 간 상관계가 역U자의 형태를 나타내고 있으며, 또한 근로자 및 자영업자 가구 대상 분석에서도 이와 유사한 패턴으로 역U자 형태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전 가구 대상 소득세제의 누진도 변화율과 소득재분배 효과 변화율로 살펴본 상관계는 음(-)의 관계를 보여 역U자 형태의 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또한 근로자 가구만을 대상으로 한 분석의 결과는 여전히 음(-)의 상관계를 도출하고 있으며 자영업자 가구만을 대상으로 한 분석의 결과에서도 여전히 음(-)의 상관계가 나타났다.

이는 전 가구 및 두 그룹으로 분할한 근로자 가구와 자영업자 가구 대상 분석에서 소득세제의 누진도가 증가할수록 소득재분배 효과는 점차 증가하다가 소득재분배 효과가 최고치에 달하는 시점, 즉 한계 소득재분배 효과가 영(0)이 되는 시점 이후 누진도가 증가할수록 오히려 소득재분배 효과는 점차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자면 소득세제의 누진도가 한 단위 추가될 때 ‘한계 소득재분배 효과 체감의 법칙’이 작용한다는 것이다.

## 5.2. 정책적 시사점

현행 우리나라 소득세제는 지하경제의 큰 규모와 비과세·감면의 급속한 증가로 인해 세입기반이 좁고 약한 것이 문제이다.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고용구조에서 자영업자 비중이 상당히 높아 세무행정상 과표양성화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하경제 규모가 상당히 크다.<sup>11)</sup> 또한 세수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대형세 중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감면에 비해 소득세 감면은 국세감면의 증가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국세감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상당히 크다.<sup>12)</sup> 이런 이유는 근로자와 자영업자간 형평과세를 실현한다는 목적으로 자영업자에 비해 근로자에게는 근로소득공제, 교육비·의료비 등의 특별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등 더 많은 공제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이 현행 소득세제의 지나친 비과세·감면으로 인해 면세점이 매우 높고 세부담이 고소득층에 집중되어 있어 세부담의 누진도가 이미 상당히 높은 상황에서 현 정부의 소득세제 개편

11) 우리나라는 2007년 기준 자영업자 비중이 31.8%로 상당히 높고, 이에 따라 GDP 대비 지하경제 규모도 25.6%로 상당히 높다(Schneider, Buehn and Montenegro, 2010,07).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멕시코도 자영업자 비중이 34.3%로 상당히 높으며 이와 비례하여 지하경제 규모도 28.8%로 상당히 높다. 이에 반해 미국은 자영업자 비중이 7.2%로 상당히 낮으며 또한 지하경제 규모도 8.4%로 상당히 낮다.

12) 최근 2001~2010년 기간 사이 국세부담은 연평균 6.6%, 국세감면은 연평균 9.1%로 증가하여 국세감면이 국세부담보다 연평균 2.5%p 더 빠르게 증가해 왔다. 같은 기간 사이 대형세 중 법인세 감면은 연평균 4.3%, 부가가치세 감면은 연평균 5.6%로 소폭 증가했던 것에 비하면 소득세 감면은 연평균 13.6%로 대폭 증가했다.

방향인 고소득층에 대한 세부담 증대는 오히려 세부담의 누진도를 더욱 높여 소득재분배 효과를 더욱 약화시킬 수 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로서 우리나라 소득세제의 누진도와 소득재분배 효과 간 상관관계는 역U자형으로 나타났다. 2012년 현재 Kakwani 지수가 0.3146, 재분배 효과 지수가 -1.3247로 소득세제의 누진도와 소득재분배 효과는 이 둘 간의 역U자형 상관관계 그래프에서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어 현행 소득세제는 세부담의 누진도가 이미 상당히 높아 소득재분배 효과는 오히려 낮아지고 있는 상태에 있다. 따라서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및 7,000만 원 이하 구간에 대한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상향조정 등 소득세제 개편은 고소득층에 소득세 부담을 더욱 집중시켜 현재보다 세부담의 누진도를 더욱 높이고 이에 따라 소득재분배 효과를 더욱 약화시킬 수 있다. 즉, 현행 소득세제는 소득재분배 효과가 미약한 것이 문제이긴 하나 그 원인이 고소득층의 낮은 세부담이 아니라 전 소득계층에 걸친 과도한 비과세·감면으로 인해 소득세제가 세수를 확보하는 세제로서 기능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소득세제 개편에 따라 고소득층에 대한 세부담이 증대할 경우 다양한 경로를 통해 서민·중산층에게 전가되어 부정적인 경제적 효과로서 서민·중산층의 생활은 악화될 수 있다. 고소득층에 대한 세부담 증대는 고소득층의 근로의욕을 저하시키고 내수를 위축시켜 생산이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리고 생산이 감소하면 상대적으로 이동성이

낮은 저소득층 근로자의 고용부터 감소하게 되어 고소득층에 대한 세부담 증대에 따른 부담은 저소득층에게 전가될 수 있다. 강석훈(2006)에 따르면 분위별 소득과 경제성장률 간의 상관계수는 1분위 0.657, 2분위 0.550, 3~8분위 0.5 수준, 9분위 0.462, 10분위 0.278로 추정되어 고소득층에 대한 세부담 증대로 인해 경제성장이 둔화되면 고소득층보다는 저소득층의 소득이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므로 향후 소득세의 세입기반 확충과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서 현 정부의 바람직한 소득세제 개편 방향은 고소득층에 대한 세부담 증대가 우선될 것이 아니라, 자영업자에 대한 과표양성화를 전제로 국민개세주의 원칙에서 모든 소득계층을 포함하는 비과세·감면 축소 및 합리화에 있다.

자영업자의 소득세 탈세는 부가가치세 탈세에 기인하므로 자영업자의 과표양성화를 위해 부가가치세의 간이과세 폐지와 근거과세 확립 등이 필요하다. 실제 부가가치율에 비해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대체로 낮아서 간이과세자는 매입액을 스스로 밝히지 않고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받아 부가가치세를 줄이려는 경우가 많다.<sup>13)</sup> 따라서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실제 부가가치율보다 높여 간이과세자가 스스로 매입액을 밝히게 하는 등 단계적으로 간이과세자를 일반과세자로 유도하면서 중국에는 간이과세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또한 기장을 유도하거나 세금계산서와 영수증 등의 과세자료 발생을 용이하게 하는 등 근거과세를 확립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13)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 매출액×업종별 부가가치율×부가가치세율(10%)

자영업자의 과표양성화에 따라 소득세의 비과세·감면 축소 및 합리화로 근로자와 자영업자 간 공제상 차별을 해소하고 면세점을 인하해 나가며 소득세의 세수확보 기능을 회복하는 소득세 정상화가 시급하다. 우선 자영업자의 과표양성화를 전제로 근로자에게 허용되나 자영업자에게는 배제되는 근로소득공제와 근로소득세액공제 등을 축소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등도 자영업자의 과표양성화에 따라 폐지를 고려하고, 그 밖에 각종 비과세·감면 등을 재검토하고 내실화할 필요성이 있다. 한편 이와 같은 소득세의 비과세·감면 축소 및 합리화에 의해 세수효과는 상당히 클 것으로 전망된다.<sup>14)</sup>

---

14) 국회예산정책처(2012.10)에 따르면 2011년 전체 조세지출액 29조 6,021억 원 중 법인세의 조세지출액은 9조 2,043억 원(31%), 부가가치세의 조세지출액은 5조 465억 원(17%)인 것과 비교해 볼 때 소득세의 조세지출액은 12조 9,851억 원(44%)이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 5.3. 연구의 한계

본 연구에서는 소득세제의 누진도와 소득재분배 효과 간 상관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1990~2012년 가계동향조사의 비교적 긴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가구 소득에 대한 시계열 자료는 충분히 얻을 수 있지만, 가구가 부담하는 세액 관련 시계열 자료는 가계동향조사가 제공하는 정보의 한계로 인해 1990~2012년 기간으로 제한되어 사용되었다. 이러한 점은 본 연구의 분석에서 다음과 같은 한계로 남는다.

1990~2012년 기간의 소득세액에 대한 시계열 자료는 가계동향조사가 제공하는 세액 자료들을 기초로 계산하였는데 이러한 세액 자료들은 조사과정에서 가구로부터 과소 보고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제한할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의 분석은 연도별 소득세제의 누진도 및 소득분배 지수 등에 대한 상대적인 위치에 기초하여 소득세제의 누진도와 소득재분배 효과 간 상관관계를 도출하고 있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의 신뢰성 있는 세액 자료가 아니더라도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결과는 항상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1990~2012년 기간이라는 비교적 긴 시계열 세액 자료는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대해 어느 정도 신뢰성을 확보한다고 여겨진다.

그리고 본 연구에 있어 주요 결과인 소득세제의 누진도와 소득재분배 효과 간의 역U자형 관계를 도출함에 있어서 상관관계 분석에 그친 점이 있다. 이는 가계동향조사가 제공하는 시계열

세액 자료의 수가 23개로 제한되어 보다 신뢰성을 갖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계량모형 분석이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본 연구의 분석은 소득세제의 누진도와 소득재분배 효과 간 상관관계를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 만약 좀 더 엄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면 우선 시계열 세액 자료의 수를 많이 확보한 후 2차 또는 3차 함수(square or cubic function)로 구체화된 계량모형을 바탕으로 회귀분석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이 좀 더 엄밀한 의미에서 소득세액 자료의 신뢰성 제고 및 계량모형을 사용한 회귀분석의 수행은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소득세법을 검토하여 소득세제의 변화 내용을 면밀히 정리한 후 이와 함께 가계동향조사로부터 가구의 소득활동 자료 등을 이용해 직접적으로 소득세액을 계산·추정하고 시계열 자료의 수를 보다 더 확충하는 것을 요구한다. 이는 시간적 혹은 물리적으로 굉장히 도전적인 작업으로 예상되며 추후 과제로 남긴다.



## 소득세제의 소득재분배 효과 분석 및 시사점

### 부 록







구분	1994		구분	1995		1996~2000		
	적용대상	공제액		적용대상	공제액	적용대상	공제액	
기초공제	○ 종합·퇴직·양도·산림 소득이 있는 거주자	72/1인	기본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100/1인	○ (좌동)		
배우자공제	○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 단, 연간소득금액이 배우자공제액 이하인 자만 해당	54/1인		② 배우자		③ 거주자·배우자와 생계를 직계존속 같이하고, 20세 이하·60세 이상(여자55세)의 형제자매	○ (좌동)	
부양가족공제	○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20세 이하·60세 이상(여자55세)의 * 단, 연간소득금액이 부양가족공제액 이하인 자만 해당, 장애인 연령제한 없음	2인 이하 직계존속 입양자 형제자매 48/1인		* 단, ②·③·소득금액이 100/연 이하인 자만 해당, 장애인 연령제한 없음		④ 생활보호대상자	100/1인	
장애자공제		54/1인				○ (좌동)		
경로우대공제	○ 기본공제대상자 중 65세 이상	48/1인	추가공제	① 65세 이상	50/1인	○ (좌동)		
부녀자세대주공제	○ 배우자가 없고 부양가족이 있는 부녀자	54/1인		② 장애인		③ 배우자가 없고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여성 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	○ 기본공제 대상자 중	50/1인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④ 6세 이하 직계비속		
다자녀추가공제					* 단, ④:근로소득여성 또는 배우자가 없는 남성에 한하여 적용			
					□ 신설			
					○ 근로소득 거주자 (일용근로자 제외)			
					○ 기본공제대상자수 - 1인:100/연 - 2인:50/연			
					*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구분	2001		2002		2003	
	적용대상	공제액	적용대상	공제액	적용대상	공제액
기본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본인 ② 배우자 ③ 거주자·배우자와 생계를 직계존속 같이하고, 20세 이하·60세 이상(여자55세)의 ·입양자 형제자매 ④ 국민기초생활보장보호대상자 * 단, ②·③:이자·배당·부동산 임대소득을 제외한 소득금액 100/연 이하인 자만 해당, 장애자 연령제한 없음	100/1인	○ (좌동)  * 장애자 → 장애인		○ (좌동)  * 단, ②·③: 소득금액 100/연 이하인 자 만 해당, 장애자 연령제한 없음	
추가공제	○ 기본공제 대상자 중 ① 65세 이상 ② 장애자 ③ 배우자가 없고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여성 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 ④ 6세 이하 직계비속 * 단, ④:근로소득여성 또는 배우자가 없는 남성에 한하여 적용	50/1인	○ 기본공제 대상자 중 ① 장애인 ② 경로자 (65세 이상) ○ (좌동) ○ (좌동) * 단, ④:근로소득여성 또는 배우자가 없는 남 성에 한하여 적용	100/1인	○ (좌동)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 근로소득 거주자 (일용근로자 제외) ○ 기본공제대상자수 - 1인:100/연 - 2인:50/연 *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 (좌동)		○ (좌동)	
다자녀추가 공제						

구분	2008		2009~2010		2011~2013	
	적용대상	공제액	적용대상	공제액	적용대상	공제액
기본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본인	100/1인	○ (좌동)	150/1인	○ (좌동)	
	② 배우자					
	③ 거주자·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20세 이하·60세 이상(여자55세)의 형제자매	직계존속 직계비속 ·입양자				
	④ 국민기초생활보장보호대상자		⑤ 위탁아동	150/1인		
	* 단, ②·③·소득금액 100/연 이하인 자만 해당, 장애인 연령제한 없고 그 배우자포함		○ (좌동)			
추가공제	○ 기본공제 대상자 중	① 경로자 65세 이상 100/1인 70세 이상 150/1인	○ 기본공제 대상자 중	① 경로자 100/1인 (70세이상) ○ (좌동)	○ (좌동)	
		② 장애인 200/1인 ③ 배우자가 없고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여성 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 50/1인				
		④ 6세이하 직계비속 100/1인 ⑤ 당해 출생한 직계비속·입양자 200/1인				
다자녀추가공제	○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2인 이상인 근로·사업소득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	○ 자녀수 -2인:50/연 -2인 초과: 50+100/ 초과1인	○ (좌동)		○ (좌동)	○ 자녀수 -2인:100/연 -2인 초과: 100+200/ 초과1인
	* 근로·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					

구분	2004		2005~2006		2007	
	적용대상	공제액	적용대상	공제액	적용대상	공제액
기본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본인 ② 배우자 ③ 거주자·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20세 이하·60세 이상(여자55세)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입양자 형제자매 ④ 국민기초생활보장보호대상자 * 단, ②·③: 소득금액 100/연 이하인 자만 해당, 장애자 연령제한 없음	100/1인	○ (좌동)		○ (좌동)	
추가공제	○ 기본공제 대상자 중 ① 경로자 65세 이상 100/1인 70세 이상 150/1인 ② 장애인 100/1인 ③ 배우자가 없고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여성 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 50/1인 ④ 6세이하 직계비속 100/1인		○ 기본공제 대상자 중 ○ (좌동) ○ (좌동) ② 장애인 200/1인 ○ (좌동) ○ (좌동)		○ (좌동)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 근로소득 거주자 (일용근로자 제외) ○ 기본공제대상자수 -1인:100/연 -2인:50/연 *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 (좌동)		□ 삭제	
다자녀추가공제					□ 신설 ○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2인 이상인 근로·사업소득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 ○ 자녀수 -2인:50/연 -2인초과: 50+100/초과1인 * 근로·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	

<부표 2> 소득공제: 특별공제

(단위: 만 원)

구분	1982			1983~1988			1989~1990		
	적용대상	공제액	공제한도	적용대상	공제액	공제한도	적용대상	공제액	공제한도
의료비공제	① 근로소득거주자 ② 배우자 ③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의료비 중 총급여액의 5%를 초과하는 의료비	24/연	○ (좌동)			○ (좌동)		
교육비공제	① 월급여 70만 원 이하 거주자	학교의 입학금· 수업료·기타공납금	보험료·의료비 공제 후 급여액	① 근로소득 거주자	학교의 입학금·수업료·기타공납금(학자금 제외)	보험료·의료비 공제 후 급여액	① 근로소득 거주자	학교의 입학금·수업료·기타공납금(학자금 제외)	보험료·의료비 공제 후 급여액
	② 2인 이내 직계비속		12/1인	② 2인 이내 직계비속		12/1인	② 2인 이내 직계비속·형제자매		
	* ①:유치원·대학원생 제외, ②:유치원·대학·대학원생 제외			○ (좌동)			○ (좌동)		
기부금특별공제	○ 종합소득자 (사업·부동산소득 제외)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 제외)	없음 종합소득금액의 5%	○ (좌동)			○ (좌동)		
창작소득특별공제	○ 창작소득	360/연	문예창작 소득금액	○ (좌동)			○ (좌동)		

구분	1991~1992			1993			1994		
	적용대상	공제액	공제한도	적용대상	공제액	공제한도	적용대상	공제액	공제한도
의료비공제	① 근로소득 거주자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100/연	○ (좌동)			○ (좌동)		
	② 배우자								
	③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 단, 노인·장애자 재활의료비: 한도 없음			○ (좌동)		
교육비공제	① 근로소득 거주자	학교의 입학금·수업료·기타 공납금(학자금 제외)	보험료·의료비 공제 후 금액	○ (좌동)			① 근로소득거주자	학교의 입학금·수업료·기타 공납금(학자금 제외)	보험료·의료비 공제 후 금액
	② 2인 이내 직계비속·형제자매								
							② 직계비속·동거입양자		
							③ 2인 이내의 형제자매		
				* ①:유치원·대학원생 제외, ②:유치원·대학·대학원생 제외			* ①:유치원·대학원생 제외, ②,③:유치원·대학·대학원생 제외		
기부금특별공제	○ 종합소득자(사업·부동산소득 제외)	법정기부금(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 제외)	없음	○ (좌동)			□ 삭제		
창작소득특별공제	□ 삭제								
무주택근로자공제	○ 총급여액 1,2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100/연	보험료·의료비·교육비 공제 후급여액	○ (좌동)			□ 삭제		
맞벌이부부특별공제				□ 신설					
				○ 기혼여성 54/연 근로소득 거주자		보험료·의료비·교육비·무주택근로자 공제 후 급여액			□ 삭제

구분	1995			1996			1997~1998				
	적용대상	공제액	공제한도	적용대상	공제액	공제한도	적용대상	공제액	공제한도		
특별공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보험료	① 근로소득 거주자 ② 기본공제대상자	대상을 피보험자로 하는 의료·고용보험료 중 부담금	50/연	○ (좌동)			○ (좌동)			
	의료비	① 근로소득 거주자 ② 기본공제대상자 * 단, 노인·장애자 재환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의료비는 한도 없음	100/연	○ (좌동)			○ (좌동)			
	교양비	① 근로소득 거주자 ② 직계비속·동거입양자 ③ 2인 이내의 형제자매 * ①:유치원·대학원생 제외, ②,③:유치원·대학·대학원생 제외	학교의 입학금·수업료·기타공납금(학자금 제외)	없음	① 근로소득 거주자 ② 직계비속·동거입양자 ③ 2인 이내 형제자매 * 단, 대학원생 제외	○ (좌동) *보육시설 추가 유치원아: 70/1인 대학생: 230/1인	○ (좌동)	○ (좌동)	○ (좌동)	○ (좌동)	
	기부금	○ 종합소득자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 제외)	없음 근로소득금액의 5%	○ (좌동)			○ (좌동)			
	주택자금	○ 무주택 또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1주택만 소유·임차(무주택자)한 세대주 * 단, 배우자·부양가족이 있는 자에 한함	주택마련저축 불입금액·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합계액의 40%	72/연	○ (좌동)			○ (좌동)			
	한도	○ 일용근로자 제외 ○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 특별공제 총 한도: min(240/연, 근로소득금액)			○ (좌동) ○ 특별공제 총 한도: 근로소득금액			○ (좌동)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표준	① 특별공제 미신청한 근로소득거주자 ② 종합소득만 있는 거주자 * 단, 일용근로자 제외		60/연	종합소득금액	○ (좌동)			○ (좌동)		

구분	1999			2000		2001		
	적용대상	공제액	공제한도	적용대상	공제액·한도	적용대상	공제액	공제한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직업상환부담비 제외)	① 근로소득거주자 ② 기본공제대상자	대상은 피보험자 로하인 의료·고용 보험료 중 부담금	70/연	○ (좌동)		○ (좌동) ③ 장애자		100/연
	① 근로소득거주자 ② 기본공제대상자 * 노인·장애자재활의료비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한도 없음, 연령·소득제한 없음	200/연	○ (좌동)		○ (좌동)		300/연
	① 근로소득거주자 ② 배우자·직계비 속·형제자매·입양자	학교·보육시설·학 원(취학전아동)·국 외교육기관의 인 학금·수업료·보육 비용·수강료·기타 공납금	영유아·유치원 아·취학전아 동 100/1인 초·중·고 150/1인 대학생 300/1인	○ (좌동)		○ (좌동)		
	* 단, 대학원생 제외, 연령제한없음, 장학금 등 제외					* ①:대학·대학원생제외, ②:대학원생 제외 ○ (좌동)		600/연
	주택자금 ○ (좌동)		180/연	○ (좌동)	* 단,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주는, 실 거주주택에 대해서만 이자상환액 공제	○ (좌동)		
	한도 ○ (좌동)			○ (좌동)	* 총 한도: 종합소득금액 * 기부금·표준공제 제외	○ (좌동)		
	종합소득금액 공제							
기부금공제	○ (좌동)			○ 종합소득자 (일용근로자제외) * 한도: 종합소득금액-법정기부금×10%,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필요경비에 사입한 기부금 제외)			
표준공제	○ (좌동)			○ (좌동)				
연금보험료 공제					□ 신설 ○ 종합소득자 국민·공무원·군인·사립학 교교직원·발정우체국 금보험료 중 기여·부담금 연금액 *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종합소득 금액		

구분	2002			2003			2004		
	적용대상	공제액	공제한도	적용대상	공제한도	적용대상	공제액	공제한도	
특별공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보험료	○ (좌동) ③ 장애인	○ (좌동)	○ (좌동)	100/연	○ (좌동)			
	의료비	○ (좌동) * 노인·장애인 재활의료비 한도없음, 연령·소득 제한없음		○ (좌동)	500/연	○ (좌동)			
	교육비	○ (좌동) * 원격대학 추가	○ (좌동)	○ (좌동)	영유아·유치원아·취학전아동	○ (좌동)			영유아·유치원아·취학전아동·초·중·고등학생
					150/1인				
					초·중·고등학생				
					200/1인				
					대학생			대학생	
					500/1인			700/1인	
		□ 신설		○ (좌동)		○ (좌동)			
	○ 장애인	국내외 사회복지시설·비영리법인 특수교육비	150/1인					* 한도 삭제	
혼인장례이사					□ 신설			○ 본인 부양가족의 혼인·장례·이 없음 사비용 100/연 * 총급여액이 2,500/연 이하일 때 적용	
주택자금	○ (좌동)	300/연	○ (좌동)	①:300/연 ①+②:600/연	○ (좌동)			①:300/연 ①+②:1,000/연	
한도	○ (좌동)		○ (좌동)		○ (좌동)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표준공제	○ (좌동)			○ (좌동)		○ (좌동)			
기부금공제	○ (좌동)			○ (좌동)		○ (좌동)			
연금보험료공제	○ (좌동)			○ (좌동)		○ (좌동)			

구분	2005			2006		2007	
	적용대상	공제액	공제한도	적용대상	공제한도	적용대상	공제한도
특별공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보험료	○ (좌동)		○ (좌동)		○ (좌동)	
	의료비	○ (좌동)		○ (좌동)		○ (좌동)	
	교육비	○ (좌동)		○ (좌동)		○ (좌동)	
	특수 교육비	○ (좌동)		○ (좌동)		○ (좌동)	*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
	혼인·장례·이사	○ 거주자·주소의이동·100/연 ○ 기본공혼인·장례·제 대상자·주소의이동 * 총급여액이 2,500/연 이하일 때 적용		○ (좌동)		○ (좌동)	* 총급여액 2,500/연 이하일 때 적용, 기본공제 대상자는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
	주택자금	○ (좌동)		○ 무주택 또는 국민주택규모 이하·3억 원 이하 1주택만 소유·임차(무주택자)한 세대주	○ (좌동)	○ (좌동)	
	한도	○ (좌동)		○ (좌동)		○ (좌동)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표준공제	① 특별공제 미신청한 근로소득거주자 100/연 ② 종합소득만 있는 거주자 60/연 * 단, 일용근로자 제외	종합소득금액	○ (좌동)		① 특별공제 미신청한 근로소득거주자·성실사업자 ② 종합소득만 있는 거주자 * ①:일용근로자 제외, ②:성실사업자 제외	○ (좌동)
기부금공제	○ (좌동)		○ (좌동)		○ (좌동)		
연금보험료공제	○ (좌동)		* 근로자퇴직연금보험료 추가 * 한도:근로자퇴직연금+연금저축불입액=300/연		○ (좌동)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 공제					□ 신설 ○ 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 연금소득에 대한 이자상당액 * 연금소득금액에서 공제	min(연금소득금액, 200/연)	

구분	2008			2009		
	적용대상	공제액	공제한도	적용대상	공제액	공제한도
특별공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보험료	① 근로소득거주자 ② 기본공제대상자 ③ 장애인	대상을 피보험자로 하는 국민건강·고용·노인장기요양보험·장애 인연금보장성 보험료중 부담금	없음 100/연	○ (좌동)	
	의료비	○ (좌동)		① 근로소득거주자 ·65세이상 기본 공제대상자 ② 기본공제대상자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 는 의료비	없음 700/연
	교육비	○ (좌동)		① 근로소득거주자 ② 배우자·직계비 속·형제자매·입 양자·위탁아동	학교·보육시설·학원(취학 전아동)·국외교육기관·원 격대학의 입학금·수업료· 보육비용·수강료·기타공납 금·급식비·교과서대·교복 구입비용	영유아·유치원·취학 전아동·초·중·고등 대학생 900/1인
	특수교육 후인 등	○ (좌동)				○ (좌동)
	주택자금	○ (좌동)				□ 삭제
	한도	○ (좌동)				○ (좌동)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표준공제	○ (좌동)				○ (좌동)
	기부금 공제	○ 법정기부금 ○ 지정 기부금	전액 공제. 한도 없음 한도: [(종합소득금액 - 법정기부 금) × 10%(5%) + min(종합소득금액 - 법정기부 금) × 10%, 종교단체 의 기부금 그 외 한도: [종합소득금액-법정기부금]×20%(15%)	○ (좌동) ○ (좌동)		
	연금보험료공제	○ (좌동)			* 과학기술인공제회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연금보험료 추가, 근로자퇴직연금+연금저축납 입액:300/연
	주택담보노후연 금이자비용 공제	○ (좌동)			○ (좌동)	

구분	2010		2011~2013		
	적용대상	공제액·한도	적용대상	공제액·한도	
특별공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보험료	○ (좌동)	○ (좌동)	○ (좌동)	
	의료비	○ (좌동)	○ (좌동)	○ (좌동)	
	교육비	○ (좌동)	○ (좌동)	○ (좌동)	
	특수교육	○ (좌동)	○ (좌동)	○ (좌동)	
	주택자금	○ 무주택 또는 국민주 택규모 이하·3억 원 이하 1주택만 소유· 임차(무주택자)한 세 대주	① 주택마련저축 불입 금액·주택임차차입 금 원리금상환액· 월세액의 40% 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①:300/연 ①+②:1,000/연	○ (좌동)
		* 단, ①:월세액은 총급여액 3,000/연 이하인 사람만 적용			
	한도	○ (좌동)		○ (좌동)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표준공제	○ (좌동)		○ (좌동)	
기부금 공제	○ 법정기부금	전액 공제, 한도 없음	○ 법정기부금	전액 공제, 한도 없음	
	○ 지정 기부금	종교단체 기부금 한도: [(종합소득금액 - 법정기부금) × 10%] + min[(종합소득금액 - 법정기부 금) ×10% , 종교단체 외의 기부금] 그 외 한도: [종합소득금액-법정기부금]×20%	○ 지정 기부금	종교단체 기부금 한도: [(종합소득금액 - 법정기부금) × 10%] + min[(종합소득금액 - 법정기부금) ×20% , 종 교단체 외의 기부금] 그 외 한도: [종합소득금액-법정기부금]×30%	
	○ 그 외	한도: [종합소득금액-법정기부금]×20%	○ 그 외	한도: [종합소득금액-법정기부금]×30%	
연금보험료공제	○ (좌동)		○ (좌동)	근로자퇴직연금+연금저축납입액:400/연	
주택담보노후연 금이자비용 공제	○ (좌동)		○ (좌동)		

&lt;부표 3&gt; 국세수입 및 감면

(단위: 억 원, %)

구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국세 수입액	756,580	929,347	957,148	1,039,678	1,146,642	1,177,957	1,274,657	1,380,443	1,614,591	1,673,060	1,645,416	1,777,184	1,923,812	2,032,880	2,163,763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국세 감면액	105,419	132,824	137,298	147,261	175,080	182,862	200,169	213,380	229,651	287,827	310,621	299,997	296,021	297,317	297,633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소득세 수입액	158,546	175,089	186,604	191,605	207,873	234,340	246,505	310,043	388,560	363,551	344,233	374,619	422,877	451,614	505,950
	21.0	18.8	19.5	18.4	18.1	19.9	19.3	22.5	24.1	21.7	20.9	21.1	22.0	22.2	23.4
소득세 감면액	47,988	51,692	48,643	55,512	64,291	73,982	80,360	91,114	104,144	154,547	160,593	152,787	129,851	141,359	140,612
	45.5	38.9	35.4	37.7	36.7	40.5	40.1	42.7	45.3	53.7	51.7	50.9	43.9	47.5	47.2
법인세 수입액	93,654	178,784	169,679	192,432	256,327	246,784	298,055	293,622	354,173	391,545	352,514	372,682	448,728	475,451	479,978
	12.4	19.2	17.7	18.5	22.4	21.0	23.4	21.3	21.9	23.4	21.4	21.0	23.3	23.4	22.2
법인세 감면액	25,386	43,286	48,397	45,980	58,698	56,948	68,408	60,810	61,925	70,181	71,767	70,491	92,043	81,247	83,161
	24.1	32.6	35.2	31.2	33.5	31.1	34.2	28.5	27.0	24.4	23.1	23.5	31.1	27.3	27.9
부가가치세 수입액	203,690	232,120	258,304	316,088	334,470	345,718	361,187	380,930	409,419	438,198	469,915	491,212	519,069	540,513	589,893
	26.9	25.0	27.0	30.4	29.2	29.3	28.3	27.6	25.4	26.2	28.6	27.6	27.0	26.6	27.3
부가가치세 감면액	21,165	26,408	28,120	30,267	32,628	31,735	30,784	38,033	40,083	39,657	43,741	45,921	50,465	52,913	52,261
	20.1	19.9	20.5	20.6	18.6	17.4	15.4	17.8	17.5	13.8	14.1	15.3	17.0	17.8	17.6
기타세 수입액	300,690	343,354	342,561	339,553	347,972	351,115	368,910	395,848	462,439	479,766	478,754	538,671	533,138	565,302	587,942
	39.7	36.9	35.8	32.7	30.3	29.8	28.9	28.7	28.6	28.7	29.1	30.3	27.7	27.8	27.2
기타세 감면액	10,880	11,438	12,138	15,502	19,463	20,197	20,617	23,423	23,499	23,442	34,520	30,798	23,662	21,798	21,599
	10.3	8.6	8.8	10.5	11.1	11.0	10.3	11.0	10.2	8.1	11.1	10.3	8.0	7.3	7.3

주: 1) 1999~2011년 실적, 2012년 잠정, 2013년 전망

2)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 직전 3년 기간 동안의 평균 국세감면율 + 0.5%p, 2007년부터 도입

&lt;부표 4&gt; 소득재분배 시계열 추이

	전체가구		근로자가구		자영업자가구	
	Gini	Atkinson	Gini	Atkinson	Gini	Atkinson
1990	0.2933	0.1328	0.2786	0.1247	0.3381	0.1551
1991	0.2936	0.1325	0.2750	0.1168	0.3437	0.1716
1992	0.2770	0.1215	0.2617	0.1088	0.3146	0.1504
1993	0.3005	0.1380	0.2739	0.1198	0.3578	0.1701
1994	0.2988	0.1409	0.2735	0.1174	0.3499	0.1843
1995	0.3288	0.1666	0.2878	0.1299	0.4195	0.2217
1996	0.3278	0.1670	0.2853	0.1295	0.4040	0.2081
1997	0.3281	0.1675	0.2765	0.1216	0.4446	0.2456
1998	0.3546	0.1874	0.2974	0.1497	0.4914	0.2377
1999	0.3613	0.2295	0.3172	0.1631	0.4838	0.3731
2000	0.2802	0.1415	0.2671	0.1198	0.3082	0.1876
2001	0.3113	0.1720	0.2876	0.1339	0.3525	0.2326
2002	0.2966	0.1575	0.2726	0.1206	0.3425	0.2249
2003	0.3327	0.1842	0.2855	0.1334	0.4073	0.2452
2004	0.3426	0.2012	0.2970	0.1451	0.4103	0.2674
2005	0.3527	0.2165	0.2995	0.1492	0.4289	0.2922
2006	0.3853	0.2496	0.2994	0.1538	0.4791	0.3065
2007	0.3871	0.2564	0.3032	0.1551	0.4786	0.3223
2008	0.3828	0.2526	0.2997	0.1506	0.4757	0.3219
2009	0.3826	0.2593	0.3039	0.1597	0.4898	0.3475
2010	0.3683	0.2376	0.2965	0.1464	0.4808	0.3379
2011	0.3741	0.2412	0.2999	0.1479	0.4935	0.3442
2012	0.3699	0.2394	0.2942	0.1454	0.4825	0.3340

## 참고문헌

- 강석훈(2006.04), “양극화의 오해와 남용: 소득 양극화를 중심으로”, 바른사회시민회의, 시장경제제도연구소 창립 1주년 기념토론회.
- 국회예산정책처(2012.10), “2013년도 조세지출예산서 분석”.
- 기획재정부(2013.08.08), “2013년 세법개정안”.
- 기획재정부(2013.08.08),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
- 기획재정부(2013.08.13), “2013년 세법개정안 내용 일부 수정·보완”, 보도자료.
- 김지영·박상원·성명재·송호신·전병힐·조명환(2010), 정치구조가 조세 재정정책에 미치는 영향, 조세연구원 연구보고서.
- 박찬용(2003), “한국의 이전소득과 직접세의 소득불평등 축소효과 분석” *공공경제* 8, 61-94.
- 성명재(2002), “1996~2001년의 소득 및 소득세 부담 변화추이: 도시가구를 중심으로”, *재정포럼* 2002년 10월호, 한국조세연구원, 61-80.
- 성명재(2002), “인구학적 특성 변화가 도시가구의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 분석: 이혼과 노령화 문제를 중심으로” *재정포럼* 2002년 3월호, 한국조세연구원, 36-53.
- 성명재(2003), “1990년대 전·후반기의 소득세 부담률의 요인별 효과 분리추정에 관한 연구” *재정연구* 9(2), 1-32.
- 성명재(2011), “1990년대 이후 정부별 소득세 개편이 세부담 및 소득재분배에 미친 효과 분석” *재정학연구* 4(1), 111-152.
- 송원근·황상현(2013.06), “비과세·감면 정비에 따른 기업규모별 세부담 변화와 시사점”, KERI Insight 13-05, 한국경제연구원.

- 안중범·송재창(2006), “한국형 EITC제도 도입의 파급효과와 추진방안” *재정논집* 20(2), 33-71.
- 여유진(2009), “공적이전 및 조세의 소득재분배효과” *사회보장연구* 25(1), 45-68.
- 임병인(2010), “보험료 공제제도의 소득재분배 효과” *재정학연구* 3(2), 125-156.
- 임병인(2012), “근로장려세제(EITC)의 소득재분배효과” *경제연구* 30(2), 147-168.
- 전영준(2004), “ETIC 도입을 위한 정책과제” *공공경제* 9(1), 177-223.
- 전영준·남재량(2011), “저소득 근로자 지원정책의 실효성 분석 - 실업보험, EITC, 최저임금제, 기초생활보장제도 상호 비교.” *재정학연구* 4(2), 1-46.
- 전영준·현진권(2008), “개방화와 조세정책의 재분배 효과” *응용경제* 4(2), 177-223.
- 황상현(2012), “비과세·감면 및 불합리한 조세체계 개선”, 차기정부 정책과제 3 - 조세·재정 | 복지·연금, 한국경제연구원.
- Atkinson, A. (1970), “On the Measurement of Inequality”, *Journal of Economic Theory* 2: 244-263.
- Barthold, T. (1993), “How should we Measure Distribution”, *National Tax Journal* 46(3): 291-299.
- Davidson, R, and J.-Y. Duclos (1997), “Statistical Inference for the Measurement of the Incidence of Taxes and Transfers”, *Econometrica* 65(6): 1453-1465.
- Duclos, J.-Y. (1995), “Measuring Progressivity and Inequality”,

*Working Paper.*

- Kakwani, N. (1977), "Measurement of Tax Progressivity: An International Comparision", *Economic Journal*, 87: 71-80.
- Schneider, Buehn and Montenegro (2010.07), "Shadow Economies All over the World: New Estimates for 162 Countries from 1999 to 2007",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No. 5356, the World Bank.
- Suit, D. (1977), "Measurement of Tax Progressivity", *American Economic Review* 67(4): 747-752.
- Sung, M.J. and K.-B. Park (2011), "Effects of Taxes and Benefits on Income Distribution in Korea", *Review of Income and Wealth*, 57(2): 345-363.

## Abstract

### An Analysis on the Income Redistributive Effect of Income Tax System and Implications

Youn Seol and Sanghyun Hwang

In general, it is known that the progressivity and income redistributive effect of income tax system show an inverted-U relationship. Using Household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data from 1990 to 2012, this research report empirically investigates the correlation between progressivity and income redistributive effect of Korea's income tax system and gives policy implications. The result from empirical analysis is that the correlation between progressivity and income redistributive effect of Korea's income tax system is inverted-U. Moreover, it supports the inverted-U relationship that the correlation between progressivity and income redistributive effect in change rate shows an negative relationship. This implies that the 'law of diminishing marginal income redistributive effect' works when the progressivity of income tax system increases by a unit. That is, the income redistributive effect increases at first but decreases after a highest value as the progressivity of income tax system increase. In 2012, the progressivity and income redistributive effect of income tax system as the Kakwani index of 0.3146 and the income redistributive

effect of  $-1.3247$  is on the right-hand side of the inverted-U correlation graph. Therefore, it concludes that Korea's current income tax system already has a higher progressivity so that the income redistributive effect gets lower. If the present government raises the progressivity of income tax system, to expand the tax revenue and realize the equity in taxation, then the income redistributive effect could be weakened as a result deviated from the policy intended.